

석 사 학 위 논 문

평화유지군의 신속파병 발전방향 연구

-서회, 단비부대 1진의 파병을 중심으로-



2012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경 영 학 과

국 방 경 영 전 공

노 정 기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선호

평화유지군의 신속파병 발전방향 연구

-서희, 단비부대 1진의 파병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development of rapid deployment scheme
for the overseas Peace Keeping Operation unit

-Focused on Suhee unit in Iraq and Danbi unit in Haiti-

2011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경 영 학 과

국 방 경 영 전 공

노 정 기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선호

평화유지군의 신속파병 발전방향 연구

-서희, 단비부대 1진의 파병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development of rapid deployment scheme
for the overseas Peace Keeping Operation unit

-Focused on Suhee unit in Iraq and Danbi unit in Haiti-

위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경 영 학 과

국 방 경 영 전 공

노 정 기

노정기의 경영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국 문 초 록

평화유지군의 신속파병 발전방향 연구

-서회, 단비부대 1진의 파병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경 영 학 과

국방경영전공

노 정 기

해외파병 1진 부대의 실태와 신속파병 발전방안은 연구자의 파병 1진 부대의 귀국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를 하였다. UN의 설립과 평화유지활동, 세계 각국의 평화유지활동의 추세를 알아보았다. 국가이익을 위해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확대하며 신속한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군도 PKO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신속한 파병이 되도록 해야 한다. 서회부대와 단비부대의 1진 파병 실태를 분석하여 각 참모기능별 파병준비와 파병 간 주요활동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인사, 정보, 작전, 군수, 공사분야의 세부적인 실태와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는데 차후 파병 1진의 후배들에게 작은 도움의 Know-how가 되었기를 바란다.

신속파병을 위한 방안은 크게 4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UN PKO 참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다. UN PKO만 가능한 것과 국회 사전동의 요건의 복잡성을 개선해야 한다. 다국적군 PKO도 가능하게 하고, 국회 동의 요건도 단순화하여 정부정책의 결정으로 파병 상비부대를 1개월 이내에 파병토록 해야 한다. 둘째는 신속파병 기반체계 구축이다. 3군 합동의 파병지원과를 신설하여 지원업무를 단일화, 단순화한다. 상비부대의 공병부대 장비를 현대화 하고, 물

자도 비축해야 한다. 정부차원의 PKO센터를 신설하여 언론, 국회, 타 국가와의 업무를 해결하고, 국가적 차원의 민간인, 경찰, 군인들을 교육 시킨다. 파병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개인파병을 확대하고 부대 파병의 안내자로 활용한다. 셋째는 파병지원 분야의 발전이다. 표준화된 조립식 컨테이너를 개발, 장비 수송 시 우리의 해군과 공군의 장비를 이용토록 수송수단을 개발하고, 능력을 육성하는 것이다. 넷째는 민군의 협력 강화로 상호 지원,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얻는 방안이다.

【주요어】 평화유지활동, 신속파병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 2 장 국제 평화유지활동의 이해	3
제 1 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UN PKO)	3
가 국제연합의 창설	3
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4
다 UN PKO의 법적 근거	4
4. 평화유지활동의 유형	5
제 2 절 한국군의 평화유지활동 참여관련 근거	7
제 3 절 한국군의 평화유지활동	10
가 평화유지활동 현황	10
나 한국군 평화유지활동의 문제점	11
제 3 장 각국의 평화유지활동	14
제 1 절 각국의 평화유지활동 참여	14
가 UN PKO 변화 추세	14
나 각국의 평화유지활동	15
제 2 절 아이티 주요 파병국 현황	17
제 3 절 이라크 주요 파병국 현황	20
제 4 절 각국의 평화유지활동에서 본 한국군의 파병방향	22

제 4 장	한국군 PKO 활동	23
제 1 절	해외 파병 개요	23
가	이라크 서희부대	23
나	아이티 단비부대	25
제 2 절	평화유지활동 부대의 파병준비	29
제 3 절	평화유지활동 부대전개	46
제 4 절	평화유지활동 부대 파병간 주요활동	48
제 5 절	파병 성과	72
제 5 장	한국군 신속파병 방향	74
제 1 절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	74
제 2 절	신속파병 기반체계 구축	78
가	해외 파병지원부서 신설	78
나	파병 상비부대의 준비태세 강화	79
다	정부차원의 PKO 센터 신설	80
라	해외 파병 전문 인력 개발	81
제 3 절	파병지원분야 발전	84
가	표준화된 조립식 컨테이너 개발	84
나	파병 수송 수단 및 능력 개발	86
제 4 절	민군 협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87
제 6 장	결 론	89
【Abstract】		91
【참고문헌】		93

【 표 목 차 】

[표 2-1]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탄생 배경	3
[표 2-2] UN PKO와 다국적군 PKO	6
[표 2-3] UN PKO참여 법률 주요 내용	8
[표 2-4] 법률과 훈령의 주요 내용	9
[표 2-5] 한국군 파병 현황	10
[표 2-6] 분담금 현황	12
[표 2-7] 해외 파병 업무 관련 부서	12
[표 3-1] UN PKO 변화 추세	15
[표 3-2] 아이티 주요 파병국 군병력 현황	17
[표 3-3] 이라크 주요 파병국 군병력 현황	20
[표 4-1] 이라크 전쟁 원인 분석	24
[표 4-2] 2003년 한국 정세	24
[표 4-3] 서희부대와 단비부대의 비교	27
[표 4-4] 서희부대와 단비부대의 참모부 편성	29
[표 4-5] 부대편성의 절차	35
[표 4-6] 상급부대 파병보고	37
[표 4-7] 단비부대 파병 업무협조선	39
[표 4-8] 단비부대 장비현황	40
[표 4-9] 단비부대 탄약현황	41
[표 4-10] 서희부대와 단비부대의 수송방법	42
[표 4-11] 현지조사단의 사전조사 점검사항 및 1진 부대 적용	43
[표 4-12] 단비부대와 서희부대의 선발대 현황	46
[표 4-13] 단비부대와 서희부대의 포상현황	49
[표 4-14] 단비부대와 서희부대의 지휘체계	56
[표 4-15] 서희부대의 민사작전 기관의 상호관계	57
[표 4-16] 민사작전 비교	58
[표 4-17] 급식 현황	60

[표 4-18] 단비부대 장비현황	61
[표 4-19] 물자 수송/하역	62
[표 4-20] 단비부대 주둔지 시설 설치 현황	65
[표 4-21] 편의시설 현황	66
[표 4-22] 서희부대 전후복구 현황	68
[표 4-23] 단비부대의 복구/지원 현황	68
[표 4-24] 민관군의 시너지 효과	70
[표 5-1] 파병관련 법적 근거들의 주요내용	75
[표 5-2] 신속파병의 용이성 비교	76
[표 5-3] 신속파병을 위한 UN PKO참여 법률 개정건의 내용	76
[표 5-4] 파병지원과 신설건의 내용	78
[표 5-5] 단비부대 장비현황	80
[표 5-6] 한국군 개인파병 현황	82
[표 5-7] 표준화 조립식 컨테이너 설계소요 판단	85
[표 5-8] 단비부대 방문 NGO 현황	87

【 그림 목 차 】

<그림 2-1> 한국군 평화유지활동 현황	10
<그림 4-1> 이라크 지형도	23
<그림 4-2> 아이티 지형도	26
<그림 4-3> 서희부대 및 단비부대 창설식	31
<그림 4-4> 서희부대 단결행사	32
<그림 4-5> 단비부대 현지인 초빙교육	34
<그림 4-6> 파병전 교육	36
<그림 4-7> 단비부대 지휘동제실 구성	37
<그림 4-8> 서희부대 피복준비	38
<그림 4-9> 서희부대 사물놀이	45
<그림 4-10> 단비부대 선발대 이동 및 천막설치	46
<그림 4-11> 서희부대와 단비부대의 단결행사	50
<그림 4-12> 외국군과의 단결행사	50
<그림 4-13> 단비부대 메달퍼레이드	52
<그림 4-14> 서희부대와 단비부대의 출입증	54
<그림 4-15> 단비부대 주둔지 변화모습	55
<그림 4-16> 단비부대 율타리	57
<그림 4-17> 단비부대 민사작전	58
<그림 4-18> 단비부대 차량점검	61
<그림 4-19> 단비부대 장비하역	63
<그림 4-20> 서희부대 주둔지 조성	64
<그림 4-21> 단비부대 주둔지 조성	65
<그림 4-22> 단비부대 편의시설 설치	66
<그림 4-23> 단비부대 피해복구 모습	69
<그림 4-24> 단비부대 천막 단열재 처리	70
<그림 5-1> 단비부대 3진의 컨테이너 영구시설 모습	84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국은 6·25 전쟁 시 60여 개국으로부터 병력과 장비, 물자의 지원을 받았다. UN이 창설된 후 가장 먼저 UN과 세계 각국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많은 은혜를 받았으나 이제는 은혜를 베풀고 있다. 경제 대국 12위로 켜의 성장 저변에는 6·25 전쟁 당시의 도움 덕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야 할 능력도 되었고 그 의무도 있다.

냉전 종식 후 UN의 역할은 증대되었다. 분쟁 예방과 분쟁 종식 후 국가의 제 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평화유지활동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평화유지활동은 양적·질적으로도 다양화되고 복잡화되고 있음을 이라크 서희부대 1진의 중대장 경험과 아이티 단비부대1진의 정작과장 직책을 수행하면서 느꼈다. 파병의 유형이 다름에 따라 국민의 여론이나 지지도에서도 차이가 났으며, 지휘체계도 다르고, 임무수행의 방식도 다름을 알았다. 두 번의 1진 부대 파병을 경험함으로써 1진 부대의 실태와 신속파병의 중요성을 느꼈다. 1진 부대는 신속한 파병이 요구되지만 그 요구만큼 파병준비는 반비례하게 미흡함을 보았다. 2003년 이라크로 파병 시에 느꼈던 미흡사항을 2010년 아이티로 파병을 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느꼈다. 개선 및 발전사항이 없었다. 더 이상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1진 파병 부대 장병에게는 Know-how를 전수하고 파병유관기관(정부, 국회, 국방부, 파병부대)에게는 신속파병을 위해 무엇을 개선하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잘 준비된 신속파병은 파병 1진 부대가 임무수행 하는데 여건을 조성해주고 이는 파병의 목적인 국가이익과 세계평화유지에 부합될 수 있다. 평화유지활동의 근거와 개선방안, 세계적 추세와 한국군의 적용, 파병 1진 부대의 실태와 개선방안, 신속파병의 방안을 연구하여 차후의 파병 1진 부대는 잘 준비된 상태에서 신속하게 파병을 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연구를 시작해 보았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해외 파병 1진 부대의 파병 실태와 신속 파병 방안의 연구를 위해 해외 파병 평화유지활동 관련법들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헌법,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국방부 해외파병업무 훈령 등을 살펴보고 각각의 법적 근거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UN 가입 국가 중 이라크에 파병된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국가의 현황과 아이티에 파병된 UN 평화유지활동의 파병국가 현황을 알아보아 저들의 파병 목적을 이해하고자 했다. 특히 이라크 서희부대 1진과 아이티 단비부대 1진의 귀국보고서와 교훈집을 분석하여 1진 부대의 파병 실태를 각 참모 기능별로 알아보았다. 각 기능별 파병준비에서부터 파병활동간 각종 활동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하였다. 그리고 파병 관련 유관기관들의 문헌이나 세미나 자료와 군부대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료를 획득하여 연구하였다. 파병에 관한 책자와 귀국보고서를 검토하고, 파병관련 세미나에 참석하여 전문가들의 고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연구의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느끼고, 보고, 땀 흘리며 배운 경험들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본 연구자가 내세운 파병 1진 부대의 참모기능별 개선사항들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을지의 검증과 신속파병을 위한 개선사항들이 실행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개선이 요구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만 했다.

제 2 장 국제 평화유지활동의 이해

제 1 절 유엔 평화유지활동(UN PK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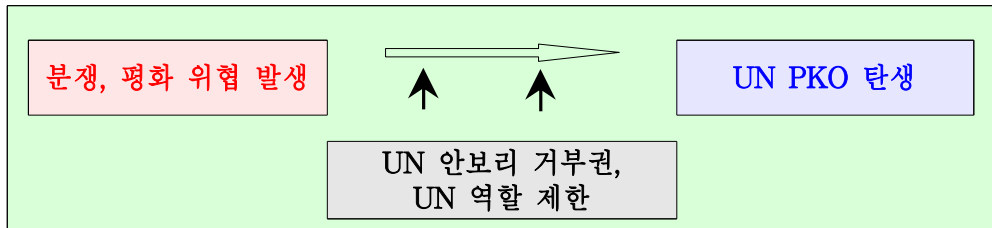
가. 국제연합(UN)의 창설

국제사회는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전쟁을 방지하고 각종 국지적 분쟁부터 사전에 조율하여 전쟁으로의 발전을 억제하며, 일단 전쟁으로 확산되면 이를 조기에 타결할 목적으로 1차 대전 이후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을 창설하였다. 그러나 1차 대전의 전승국이었던 영국, 프랑스 등이 독일에 과도한 배상과 제한조치를 고집하여 독일로 하여금 2차 대전의 불씨를 만들게 하였다. 2차 대전이 발발하자 국제연맹의 주축국이었던 미국은 전쟁 자동개입을 우려해 의회 반대로 국제연맹에 가입조차하지 못했다. 2차 대전 후 1941년 루즈벨트, 윈스턴 처칠의 주도하에 국제연합(United Nations)이 창설되었다. 1945년 10월 24일 51개국이 최초 창설에 참여하였고, 우리나라는 1991년에 가입했다. 현재는 192개국이 가입하여 명실 공히 전 세계적인 권력기구로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엔의 헌장 전문에는 ①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②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 재확인 ③정의와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 ④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 ⑤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합하며, 공동이익을 위한 경우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원칙의 수락과 방법의 설정에 의하여 보장 ⑥모든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을 결의하면서 이러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을 결집할 것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유엔은 6대 기관과 전문기구 그리고 보조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6대 기관은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회는 가장 중심기관이며 모든 회원국이 가입하고 1국 1표제이다. 유엔은 전쟁의 상처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평화와 인류공생을 위해 창설된 것이다.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이하 UN PKO)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이라는 용어는 1962년 분쟁 확산 방지에 관한 경비 건에 대한 국제재판소의 의견에서 유래되었다. UN PKO는 냉전시기에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 행사로 실질적인 평화유지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평화보장기구로서의 유엔은 그 역할에 있어 한계가 있게 되자 대안으로 UN PKO를 만들었다.

[표 2-1]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탄생 배경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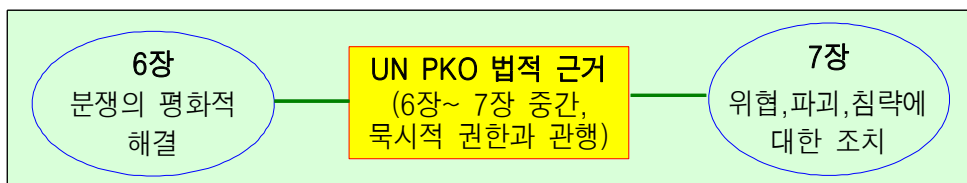


PKO의 목적은 전쟁이나 폭력사태가 발생한 지역에서 폭력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무력 사용자에 대해 응징하는 것은 아니고 분쟁 당사자간의 휴전 합의 후 UN군의 중재 배치가 이루어지고, UN PKO가 전개되어 휴전감시, 분쟁재발 억제, 질서 유지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목적	• 폭력 사태 재발 방지 • 갈등 해결의 지원(분쟁 당사자간 해결 시스템 구축 지원) • 평화 질서 유지 등
---------------------	--

다. UN PKO의 법적 근거

UN 헌장은 총 19장 11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6장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과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의 조항이다.



1) 육군본부(2011), 『분쟁해결사, “PKO 바로알기”』, 국방대 PKO센터, p29

UN PKO의 법적 근거를 6장으로 보고 있는 견해가 있으나 6장에도 7장에도 PKO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문구는 없다. 그래서 6장과 7장의 중간적 위치에서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견해가 지배적이다.²⁾ 정확한 문구가 없어 불명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UN의 설립 목적이 세계평화라는 것에 합목적이므로 법적근거를 논하는 국가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의 각국의 파병현황을 보면 중국 등 공산권 국가도 해외의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UN PKO의 근거는 “목시적 권한과 관행”에서 찾을 수 있다. ³⁾ 목시적 권한은 평화유지활동이 UN헌장 상 명시된 문구는 존재하지 않으나 UN 설립 목적⁴⁾에 일치하여 그 권한을 목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UN PKO에 대해 근거가 잘못 되었으니 UN PKO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가는 없다. 2010년 1월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아이티에는 공산진영의 중주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도 경찰을 파견하기도 했다. 현실적인 파견 목적이야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UN PKO의 합법성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UN 창설 후 수 많은 활동을 통해 체득하게 된 UN의 권한 행사는 후천적 관행이다. 최초에는 없었던 활동이고 법적 근거도 없으나 UN이 그 설립목적에 일치하는 활동들을 수행하다보니 생겨난 것이 UN PKO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UN PKO활동이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법적근거를 찾기에는 모호하며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 아이러니컬하다고 본다. 다만 여기서 연구자가 UN PKO의 법적 근거를 알아본 것은 UN PKO가 어디에서 근거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에서 출발하였는데 그 결론은 UN의 설립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UN의 권한을 행사하는 실직적인 방안이 UN PKO가 아닌가라고 생각된다.

라. 평화유지 활동의 유형(UN PKO/다국적군 PKO)

평화유지활동의 파병이라고 하면 흔히 UN PKO 파병만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평화유지활동에는 크게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 UN PKO는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으나 다국적군 PKO는 알지 못하고 있다. 미군에 대한 종속의 의미를 부여해 국가이익은 관여치 않고 반대의 여론을 조

2) 이근수 등 3명(2008), “한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방안”, 한국국방연구원, p37

3) 상계 논문 P38

4) 김열수(2010), “최근 평화유지활동의 변화방향과 대응전략”, 국방대학원, P 6

성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실정이다.

[표 2-2] UN PKO와 다국적군 PKO

구 분	유엔평화유지활동(UN PKO)	다국적군평화유지활동(MNF ⁵⁾ PKO)
설치근거	•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특정국의 주도로 창설
임 무	• 적대행위가 종료된 지역에서 - 정전감시, 전후복구 - 평화협정이행 감시 등	• 침략행위 발생, 평화 교란지역에서 - 평화회복 임무 등
무력사용	• 자위 목적에 한해 사용	• 적극적 무력 사용 - 침략격퇴, 무력진압 등
UN통제장치	• UN사무총장이 사령관을 임명하며 안보리의 지침을 받아 작전지휘권 행사	• 병력 공여국들의 자체 통제체제 • 안보리는 임무범위 및 기한 재검토 기능을 통한 형식적 통제
경비부담	• UN 회원국	• 병력 파병국 자비
설치사례	• 아이티 단비부대	• 아프카니스탄 오쉬노 부대 2004년 이라크 서희부대 등

위의 표에서 보듯이 PKO 파병은 UN PKO와 다국적군 PKO로 구분된다. 설치근거, 임무, 무력사용범위, UN에서의 통제장치, 경비부담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현재 한국군의 파병부대에서 가장 대표적인 UN PKO부대는 아이티에 파병된 단비부대이며, 다국적군 PKO는 아프카니스탄에 파병된 오쉬노부대이다. 한국인에게 있어 UN PKO는 좋은 이미지로 인식되어 있으나 다국적군 PKO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아 있다. 이는 각 유형별 파병 진행경과와 국민의 지지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단비부대 PKO는 좋은 여론지지였으나 과거 미국 주도의 이라크 서희부대 파병이나 현재의 아프카니스탄 오쉬노부대의 파병 전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기도 힘들었고, 국민의 지지도도 낮았음을 알고 있다. 국익을 위한 파병이라면 어느 유형의 파병이든 그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MNF : 다국적군(Multiple Nations Forces)

제 2 절 한국군의 평화유지활동 참여 관련 근거

가. 헌 법

헌법의 5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이는 국제 평화유지활동이 가능하다는 법적근거라 볼 수 있다. 헌법에서 말하는 국제평화유지활동은 UN PKO이거나 다국적군 PKO이든 구분되지 않고 다만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또한 60조 2항에는 국회는 선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60조에서도 5조와 마찬가지로 UN PKO 혹은 다국적군 PKO 파병의 동의권에 대한 한정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헌법의 5조와 60조에서는 평화유지활동이 가능하며 국회의 동의권도 파병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헌법상으로는 두 가지 유형의 파병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나. 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⁶⁾

1) 주요 내용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UN PKO 참여 법률)은 1조에서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2조에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은 UN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령관의 지휘 하에 UN의 재정 부담으로 특정국가(또는 지역)내에서 수행하는 ① 평화협정 이행 지원 ②정전감시 ③치안 및 안전유지 ④선거지원 ⑤복구/재건 및 개발지원 등을 비롯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다만, 개별 또는 집단의 국가가 UN의 승인을 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평화유지 또는 그 밖의 군사적 활동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3조에서는 상비부대의 설치·운영으로 파병전담 상비부대의 설치와 운영을, 6조에서는 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를 포함하고 있다. 국회의 동의권은 파병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며 이때 1천명 이내, 파병기간 1년 이내, 파병 접수국의 동의, 비전투 임무, UN의 요청 등의 요건 등이 필요하다.

6)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9939호, 2010, 1, 25)

[표 2-3] UN PKO참여 법률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법률 목적	신속, 적극 파병으로 국제 평화의 유지와 조성
PKO활동 정의	UN PKO 활동으로 한정(다국적군 파병 제외)
상비부대	파병 전담 상비부대의 설치·운영
국회 동의	사전 동의(1천명, 1년 이내, 접수국 동의, 비전투임무)

2) UN PKO 참여 법률의 문제점

UN PKO 참여 법률의 문제점은 첫째 UN PKO 파병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UN PKO 참여 법률의 주요 내용 중 제 2조 PKO활동의 정의에서 법률은 UN PKO 활동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다국적군 파병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다국적군의 파병 요청 시 신속한 파병을 위한 동법률 적용이 불가하다. 법적 근거가 없으니 국민의 공감대와 파병지지를 얻기 힘들고 국가의 사활적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파병이 필요할 때는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UN PKO 법률은 다국적군의 PKO 파병도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둘째는 국회의 동의 요건 복잡성이다. 파병을 위한 사전 동의 시 앞에서 언급된 4가지의 요건(1천명 이내, 1년 이내, 파병 접수국 동의, 비전투 임무만 수행)이 너무 복잡하고 신속한 파병에 제한 요소가 될 수 있다. 1천명 이내라는 부대의 규모와 1년 이내의 파병기간의 한정은 신속파병과 연관성이 낮다. 그러나 파병 접수국의 동의와 파병부대의 비전투 임무는 문제가 있다. 파병 접수국의 정부 기능이 마비되었을 경우 파병 접수 동의를 의사 표명이 곤란하다. 따라서 UN의 결의안이 파병 접수국의 동의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신속파병 방안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신속파병 방안에서 알아보겠다.

**다국적군 파병 제외와 복잡한 파병 동의 요건이
신속한 파병을 저해하는 법률**

다. 훈령,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국방부, 2010.10.11)

1) 주요 내용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1277호)는 6장 68조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총칙, 2장 부서·기관별 업무분장, 3장 해외파병 상비부대 운영, 4장 부대단위 해외파병 절차, 5장 개인단위 해외파병절차, 6장 파병업무 지원 및 관리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2조 해외파병의 정의이다.⁷⁾ 해외파병을 국제연합, 지역안보기구, 특정국 등의 요청에 따라 UN PKO, 다국적군 PKO에 참여하는 국군부대 또는 군 요원을 해외로 파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상비부대의 운영을 규정하여 PKO 참여 임무 부여 시 1 ~ 2개월 이내에 파병이 가능토록 즉응태세를 갖추도록 하고 있어 신속파병의 물고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상비부대는 파병전담부대, 예비지정부대, 별도지정부대로 구분되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알아보겠다.

2) 훈령의 문제점

파병훈령의 가장 큰 모순은 평화유지활동의 범위를 상위 법률인 UN PKO 참여 법률보다 넓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UN PKO 참여 법률상의 PKO 활동이 UN PKO 활동만으로 한정된 것과는 그 범위가 다르다. 즉 법률보다 하위의 법적 근거인 훈령이 상위의 법률보다 PKO 범위를 넓게 정의하고 있다.

[표 2-4] 법률과 훈령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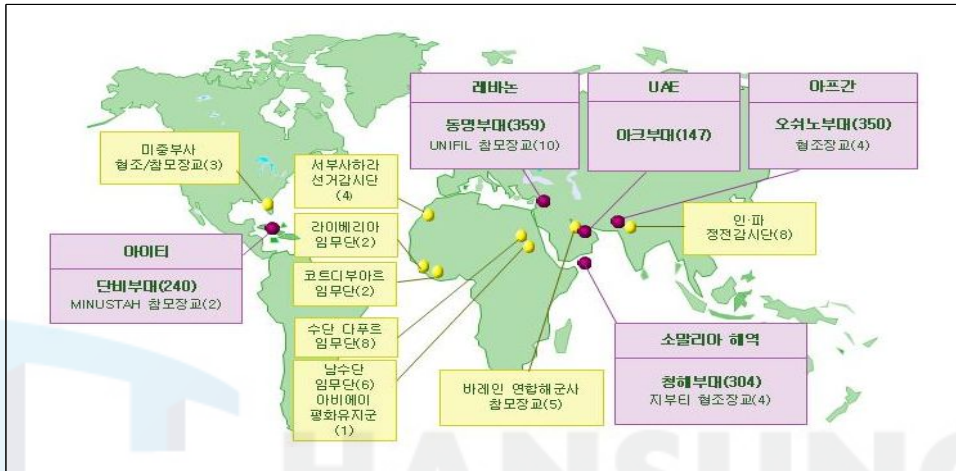
구 분	평 화 유 지 활 동
UN PKO참여 법률	UN PKO활동만으로 한정(다국적군 PKO 제외)
해외파병 훈령	UN PKO, 다국적군 PKO 가능
비 고	훈령에서의 PKO가 법률의 PKO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률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 훈령이 법률 밖의 내용까지 정의하고 있어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연구자는 판단된다. 따라서 UN PKO 참여 법률을 개정하여 다양한 파병유형에서도 신속한 파병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7)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국방부 훈령 1277호), 2010, 2조 1항

가. 평화유지활동 현황

〈그림 2-1〉 한국군 평화유지활동 현황



지도에서 보듯 PKO활동은 개인과병과 부대과병으로 구분되며 부대과병은 아이티 등 5개소에, 개인과병은 미중부사 등 13개소에서 활동 중이다. 세 부적인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⁸⁾

[표 2-5] 한국군 파병 현황

구 분			인원(명)	지 역	최초파병	교대주기	
UN PKO	부대 단위	레바논 동명부대	359	티르	'07.7	6개월	
		아이티 단비부대	240	레오간	'10.2		
	개인 단위	인도 파키스탄 정전감시단		8	라왈핀디	'94.11	1년
		라이베리아 임무단		2	몬로비아	'03.10	
		남수단 임무단		6	주바	'11.7	
		아비에이 평화유지군		1	아비에이	'11.7	
		수단 다푸르 임무단		2	다푸르	'09.6	
		레바논	사령부참모	5	나쿠라	'07.1	
			평화유지군	서부여단참모	5	티브닌	
		코트디부아르 임무단		2	아비장	'09.7	
		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		4	라운	'09.7	
		아이티 안정화지원단		2	포르토프랭스	'10.2	
	소 계		636				

8) 국방대학교 PKO센터 군 홈페이지 검색('11.10.20) 11년 8월 31일 기준 현황

구				분	인원(명)	지 역	최초파병	교대주기
다국적 군 PKO	부대 단위	청해부대		304	소말리아해역	'09.3	6개월	
		아프칸 오쉬노부대		350	차리카	'10.6		
	개인 단위	바레인연합 해군사령부	참모	3	마나마	'08.1	1년	
			협조장교	1		'09.3		
			CTF참모	1		'09.3		
		지부티연합 기동부대	협조장교	3	지부티	'09.3	6개월	
			참모장교	1		'03.2		
		아프칸 참모장교		4	카불	'09.6		
		미국중부 사령부	협조단	2	플로리다	'01.11	1년	
			참 모	1				
	소 계			670				
국방 협력	부대 단위	UAE 아크부대		147	알 아인	'10.12	6개월	
		소 계		147				
총				계	1,453			

UN PKO와 다국적군 PKO가 600여명으로써 비슷한 인원이 파병되어 있다. 법률에서는 UN PKO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다국적군 PKO활동으로도 많은 병력이 파병을 나가 있어 법률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위의 표에서 국방협력은 평화유지활동의 파병과는 다른 개념의 파병으로써, UAE와의 국방협력 차원의 파병이다. 이는 PKO와는 달라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나. 한국군 PKO 활동 문제점

1) 법률적·제도적 제한사항

한국군의 국제 평화유지활동의 법률적·제도적 제한사항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⁹⁾. 첫째, 법적 근거 특히 UN PKO 참여 법률은 UN PKO만 가능토록 명시되어 다국적군 PKO는 제한된다. 앞장에서도 언급되었지만 UN PKO 참여 법률이 PKO활동을 지원하고 상비부대 창설과 부분적 사전동의 및 파병을 가능케 하는 진일보적인 것이지만 개선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현재 파병되어 있는 병력 비율을 보더라도

9) 한용섭(2010), “한국의 파병정책 발전방향”, 국방대PKO센터,p11

도 UN PKO와 다국적군 PKO가 50% 정도의 비율로 되어 있다. 이는 법률이 현실적 실태를 제대로 인식하고 개선될 필요가 있다. 둘째, UN 분담금에 맞지 않는 과병 규모이다. '10 ~ '12년 UN 분담금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11위로써 2.26%를 차지하고 있으며, PKO 예산 분담률은 10위로써 2.26%를 차지하고 있다.

[표 2-6] 분담금 현황¹⁰⁾

구분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UN 분담금 (%)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캐나다	중국	스페인	멕시코	한국	호주
	22	12.5	8	6.6	6.1	5	3.2	3.1	3.1	2.3	2.26	1.9
PKO 분담률 (%)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중국	캐나다	스페인	한국	러시아	호주
	27.1	12.5	8.1	8	7.56	5	3.9	3.2	3.1	2.26	1.98	1.93

과병 현황을 보면 2010년 12월 기준 1,290명으로써 세계 각국의 PKO병력의 35.1만 명의 0.36% 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의 경제력(세계 12위)과 분담률 순위 등을 고려 시 너무나도 초라한 병력규모이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국제 평화유지라는 국방목표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병력을 절약 및 집중하여 과병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외 과병 관련 업무의 통합 미흡이다. 현재 PKO 활동관련 업무는 정부와 국방부, 국회 등이 관련되어 있다.

[표 2-7] 해외과병 업무 관련 부서¹¹⁾

구 분	정 부	국 회
UN PKO	외교통상부	외교통상통일 위원회
다국적군 PKO	국 방 부	국 방 위 원 회

정부차원의 과병업무에 대한 조정, 통제기관이 부재하고 PKO 유형별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회의 소위원회가 각기 상이하여 과병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복잡해진다. 그리고 해외 과병 추진시 정부는 UN 및 다국적군 종주국으로부터 참여의사를 타진 받아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수행하

10) 전병환(2011), "유엔 PKO 정책발표자료", 국방대 PKO센터, p25

11) 신경수(2010), "한국군 해외과병을 위한 법적·제도적 문제", 국회동북아 평화안보포럼 세미나 자료, p9

고 나서는 파병 관련 업무가 중단되고 전적으로 국방부에 위임한다. 파병 업무가 군에 전적으로 위임되어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국방부에서 협조해야 한다. 이로 인해 해외파병의 1진 부대는 국민의 관심은 높으나 정부지원이 미진하여 신속파병이 제한되기도 한다. 따라서 신속한 파병을 위해서는 정부의 파병 관련 부서가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2) 파병준비 및 임무수행

해외파병 현황은 앞장의 표에서 보듯이 2011년 기준 1,4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과거의 파병현황을 보면 1991년 이래 UN PKO가 누계 인원 8,346명, 다국적 PKO 누계 인원이 25,994명이다.¹²⁾ 파병 인원이 총 3만 3천명을 넘고 있다. 그러나 육군본부에서는 파병 경험을 다수 인원에게 부여하기 위해 파병 무경험자를 상당수 선발 하였다. 이로 인해 파병 1회 경험자는 상당수 있으나 3회 이상 유경험 및 전문 인력은 극소수이다. 연구자는 PKO 전문가육성이 미흡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둘째 개인파병 인원의 확대가 미흡하다. 개인 파병은 UN PKO에 8개소 37명, 다국적군 PKO에 4개소 16명, 총 53명밖에 되지 않는다. 개인 파병인원은 부대 파병의 안내자이며 신속파병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된다.



단비부대의 아이티 포르토 프랭스 공항 도착 장면

12) PKO 센터 군 홈페이지 자료 참조

제 3 장 각국의 평화유지 활동

제 1 절 세계 각국의 PKO 참여

세계 각국은 국제 평화유지활동을 남의 일이 아닌 자국의 일로 여기며 적극 참여하고 있다. UN 회원국 중 120여개 국가가 PKO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제는 PKO 활동이 국제질서의 주요 활동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국가별 PKO활동 참여 동기를 보면 국제 평화 증진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모두 국가이익을 위해 PKO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자국의 국격과 위상 제고, 국제적 영향력 확대, 전후 복구 재건사업 참여 및 외화획득 등의 경제적 이익 추구 등을 위한 국가 이익 추구 차원으로 PKO 활동 참여를 이용하고 있다.¹³⁾

가. UN PKO 변화 추세

각국의 UN PKO 활동 변화 추세를 알아보면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¹⁴⁾. 첫째, PKO 활동의 양적 확대이다. 1980년대 초반에는 예루살렘 정전감시기구에서 40여명 활동하던 것이 2011년에는 16개 임무단에서 106개국의 6만 7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것은 냉전체제 종식이후 공산권과 민주 진영의 종주국이 소규모 분쟁을 억제하고 있었는데 이 억제력이 약화되며 소규모 분쟁이 다양한 원인(종교, 에너지, 종족 등)으로 인해 더욱 활발하게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PKO 활동의 임무가 다양화 및 복잡화 되었다. UN 창설초기에는 단순히 무력분쟁의 조정/통제 역할로써의 고전적 임무만을 수행하던 것이 요즘에는 평화유지, 평화조성, 평화재건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거지원, 행정기구 구축 지원, 보건 위생 등 다양한 분야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셋째 강제 집행조치가 강화 되었다. 자위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만 무력을 사용하던 것이 분쟁국의 해상봉쇄, 공중폭격 등 다양하고 강력한 무력행사로 변모 되었다. 넷째 UN 상비군 체제가 강화되었다. UN 상비군(Stand-by- Force)의 개인은 7일 이내, 부대는 14일 이내 임무지역에 전개하며 180일분의 수리부속과 60일간 초도 소모품을 비축토록 하고 있다. 상비군은 부대편성 즉 임무수행 능력을 갖춘 신속파병군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한국군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PKO 활동이 군의 영역이 아닌

13) 전제국(2011), “한국의 해외파병과 한반도 안보”, 『국가전략』 17권 2화, 세종연구소, p36

14) 홍성원(2009), “한국군의 UN PKO현황과 발전방향”, 동국대, p49

군무원, 경찰, NGO 등 민간부분과 함께 전개되는 포괄적, 복합적 영역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재난구호, 의료지원, 전후 복구/재건지원 등에서는 민간부분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에 민관군의 상호 보완적 역할 분담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표 3-1] UN PKO 변화 추세

- ① PKO 활동의 양적 증가 (냉전 종식 후 소규모 분쟁 증가)
- ② PKO 활동 임무 다양화 및 복잡화(무력분쟁통제 → 평화유지, 선거지원 등)
- ③ 강제집행 조치 강화(자위적 무력 사용 → 해상봉쇄, 공중 폭격 등)
- ④ UN 상비체제 강화 (임무수행태세를 갖춘 신속 즉응군)
- ⑤ PKO 활동 영역 다양화 (군 영역 → 민·관·군 포괄적, 복합적 영역)

여기서 특히 연구자가 강조하고 싶은 분야는 UN 상비체제 강화와 PKO 활동 영역 다양화이다. 두 가지는 PKO 참여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는 주요인이면서 PKO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나. 각국의 PKO 활동

1) 강대국의 PKO 활동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들은 국제질서의 유지 차원에서 PKO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 확보, 테러국 제재 등과 같은 국가이익과 안보전략에 도움이 되는 지역은 다국적군 PKO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비전략지역은 UN PKO 활동에 예산과 장비 지원의 간접적 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UN PKO 보다는 다국적군 PKO에 적극적이며 이는 국익과 연관되며 UN의 지휘통제를 받기 보다는 미국이 주축국이 되는 다국적군 체제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의 전략지역에 PKO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미국 등의 자유 진영의 세계 영향력 확대에 따른 반대급부로써 자국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목적이 저변에 깔려 있다. 특히 중국은 1990년 이후 군 병력은 5천9백여 명을 16차례 UN PKO 활동에 참여시켰고, 경찰은 9백 명 수준을 7개 곳에 파견시키기도 했다.¹⁵⁾

15) 이근수 등 3명(2008), 한국의 UN PKO 활동 참여방안, 국방대 PKO 센터,p53

2) PKO 적극 참여국

PKO 활동 적극참여국은 유럽, 캐나다 등이며 직접적으로 안보위협이 없는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위협이 적어 PKO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PKO 참여를 통해 지역안보 속에서 자국안보를 지켜나가자는 국방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역안보의 협력 형태가 가장 경제적이고 현실적 안보 전략인 것이고 국제사회에 기여를 통해 강대국의 PKO 활동에 적극 동조함으로써 자국의 안보를 얻자는 것이다.

3) 특수 지위국

특수 지위국은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과 독일이다. 이 국가는 경제력은 세계 초일류국가이지만 헌법상 군사력을 증강하거나 해외 파병이 금지된 국가이다. 주변국에게 언제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대전으로 실추된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평화에 기여함으로써 주변국의 신뢰를 얻으려는 목적이다. 해외 파병을 통한 군의 간접적 경험 축적과 이로 인한 군사력의 증강을 노리는 목적도 있다. 독일은 2005년부터 약 7천여명, 장비 3,800여대를 7개 지역에 파병했다. 일본은 평화헌법 9조(군의 창설과 파병금지)와 일본 국민의 인명 피해 우려로 인한 반대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UN PKO 활동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본은¹⁶⁾ 1992년 캄보디아 UN PKO 활동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아이티에 파병한 것까지 총 12회의 UN PKO 활동 참여 경험을 가지고 있다.

4) 저개발국

경제적 저개발국가는 아시아, 중동국가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주파병 목적은 국가 경제이익이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등이 있으며 예산이나 장비파병보다는 인력위주(보병 등 전투병) 파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이티에 파병된 국가의 현황을 보면 네팔이 1천여 명, 스리랑카 950여명, 칠레 500여명, 필리핀 150여명, 과테말라 140여명 등 으로 나타난다. 이들 국가는 많은 인원이 파병될수록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므로 파병교육체계가 오히려 선진국보다 잘 구축되어 있다.

5) 결론적으로 각국의 PKO 활동 참여는 세계 평화기여라는 대외적 명분과 자국의 이익(안보적, 경제적 등) 이라는 내부적 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의 강대국인 미국으로부터 아시아의 저개발국가까지 다양한 국가들이 나름의 이유와 목적을 위해 PKO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16) 전병환(2011), 전개논문, p18

제 2 절 아이티 주요 파병국 현황(UN PKO)

중남미의 아이티에 진도 7.0의 대지진이 2010년 1월 12일 발생하여 약 2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났다. 세계 각국에서는 수많은 병력을 파견하여 아이티 지진 재해 복구를 지원하였다. 아이티는 최초 다국적군 PKO 활동으로 시작되었다. 안보리 결의 1529호(04년)에 의거 미국, 프랑스, 캐나다, 칠레 등이 참여 하였고, 그 후 04년 안보리 결의 1542호에 의거 UN PKO로 평화유지활동 형태가 변경되었다. 각국의 군 병력 파병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이 2010년 6월 기준 8,342명이다.

[표 3-2] 아이티 주요 파병국 군병력 현황¹⁷⁾

파 병 국	부 대 성 격	인원(명)	소계(명)
브라질	공병 중대	250	2,167
	보병대대 2개	1,917	
우루과이	보병대대 2개	904	1,121
	항공대	30	
	해안경비대	187	
네 팔	보병대대 2개	1,067	1,067
스리랑카	보병대대	949	949
요르단	보병대대	595	595
아르헨티나	항공대	46	550
	병원	60	
	보병대대	444	
칠 레	항공대	56	498
	칠레-에과도르공병중대	87	
	보병대대	355	
일 본	공병중대	340	340
대한민국	공병중대	240	240
페 루	보병중대	215	215
필리핀	본부중대	155	155
과테말라	헌병중대	143	143
에과도르	칠레-에과도르 공병중대	66	66
파라과이	파라과이 소대	31	31

17) 조영기 등 3명(2011),“아이티 단비부대 1·2진 귀국보고서”,국방대 PKO센터, p125

주요 국가별 특징을 간단히 알아보겠다.

가. 브라질

브라질은 남미의 중주국을 자처하면서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확장추세에 있다. 중이다. 아이티에는 보병 2개 대대, 공병중대 등 2천1백여 명을 파병 시켰다. 안보리 진출을 위해 UN PKO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MINUSTAH)의 군사분야 군사령관은 브라질 소장이 맡고 있다. 경제적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려는 문턱에 있는 브라질로써는 UN PKO 활동 참여가 세계 평화 기여와 안보리 진출 여건 조성의 목적에 잘 부합되고 있다.

나. 일 본

일본은 대령을 단장으로 한 공병부대 위주의 병력을(약 340명) 파병했다. 일본은 앞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헌법과 국민여론이라는 장애요소가 있으나 군사적 경험 축적,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주변국에 대한 신뢰구축 등의 목적으로 아이티에 파병했다. 아이티 재건지원을 위해 한국과의 연합작전도 2회(학교, 장애인 시설 지진 잔해 제거) 실시하였다. 또한 일본군 막료장(4성 장군, 한국의 합참의장과 동일 직책)이 한일연합작전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지도를 하였으며 일본 부대장 등 참모요원간의 상호 방문 12회 실시하여 우의를 다지기도 했다.

다. 스리랑카, 네팔, 필리핀 등 저개발국가

스리랑카 등 저개발 국가는 아이티 지진 발생 5년 전부터 아이티에 파병하여 다국적군 PKO 및 UN PKO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리랑카는 950여명, 네팔은 1천여명, 필리핀은 150여명 파병되어 활동 중이다. 이들 국가는 세계평화 기여보다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파병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UN에서 지급하는 수당 등이 자국에서 받는 월급보다 3배정도 높으니 외화획득을 위한 파병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스리랑카 소령의 경우 자국 봉급은 350달러이지만 UN에서 지급하는 월 단위 파병수당은 약 1,020달러이다. 앞으로 이들 국가는 경제적 목적으로 병력위주의 파병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 미국, 캐나다

아이티 지진 후 1주일 이내에 미국은 1만 여명, 캐나다는 1천 여명의 군 병력을 아이티에 신속히 파병 시켰다. 그러나 한국군이 파병된 2010년 2월 말에는 대부분 철수한 상황이었다. 이들 2개 국가는 UN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국의 통제를 받으며

PKO활동(재난복구 및 인명구출)을 실시함으로써 UN으로부터는 눈엣가시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신속 파병에 UN은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다.

마. 소결론

아이티에 파병된 국가들은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파병했다. 국가이익의 창출이 목적이다. 그 이익이라는 것이 모두 다르다. 다양한 국가들에서 배울 점이 많으나 한국군의 PKO 활동의 발전방안을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볼 수 있었다. 어떤 PKO 유형의 파병이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파병 해당지역에 신속히 병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한국은 아이티 지진 약 2개월 후 전개되었으나 미국은 1주일 만에 신속히 파병했다. 우리의 PKO 활동은 신속 파병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발전이 필요하다.



제 3 절 이라크 주요 파병국 현황

중동지역 이라크에 “이라크 자유작전”을 위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주축으로 26개국 14.9만 여명이 파병을 했다. 각국의 군 병력 파병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3] 이라크 주요 파병국 군병력 현황¹⁸⁾

구 분	인 원	구 분	인 원(명)
계		149,684	
미 국	132,263	슬로바키아	83
영 국	8,183	알마니아	72
이탈리아	2,357	헝가리	61
폴란드	1,565	그루지아	50
네덜란드	1,179	리투아니아	37
우크라이나	856	에스토니아	31
대한민국	658	불가리아	30
루마니아	565	마케도니아	29
스페인	542	필리핀	9
덴마크	376	몽 고	2
체 코	313	도미니카	2
호주	225	캐나다	1
노르웨이	167	온두라스	1

이라크 파병은 다국적군 PKO로써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강대국 위주의 동맹군 성격이 강하다. 3개국의 파병인원이 90.6%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공병부대인 서희부대와 의료부대인 제마부대를 합하여 658명으로 0.44%를 보이고 있다.

가. 미 국

미국은 이라크 다국적군 PKO의 주축국으로 4개 사단 등 13만 여명을 파병하였다. 9·11 테러에 대한 조치로써 테러 위협국은 선제공격한다는 전략으로 이라크 자유작전을 펼쳤다. 테러 예방도 목적이 있지만 이라크의 에너지 자원과 전후 복구 사업의 목적도 내면에는 있었다. 국가 이익을 위한 전략지역으로써 다국적군 PKO의 병력을 대규모로 투입했다. 미국은 UN PKO 보다는 다국적군 PKO에 더욱 적극적

18) 이우식 등 다수(2004), 『이라크 서희부대 1진 귀국보고서』, 국방대 PKO 센터, P43

이고 신속한데 이는 국가 사활적 이익(테러방지, 에너지확보)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나.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

유럽은 중·소국가들이 이라크 자유작전에 참여하였다. 이는 미국이라는 세계 경찰국가와의 동맹을 통한 자국의 안보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 참전하였다.

다. 소결론

한국군 658명의 공병 및 의무 부대를 파병하여 이라크 전후 복구를 지원하였다. 미국을 주축으로 한 다국적군의 지휘통제 하에서 PKO 활동을 전개하여 한국과의 안보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한국 내 미군병력이 이라크로 차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외교적 수단을 강구하였으나 이라크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었다. 외국으로의 다국적군 파병을 통한 한반도 안보환경 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어떠한 파병의 형태이건 PKO 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한국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 특히 안보를 지탱하는 미국과의 동맹은 중요한 국가이익이라 할 수 있다.



제 4 절 각국의 PKO 활동에서 본 한국군 파병방향

가. PKO 활동 참여 확대의 세계 추세에 동승하는 파병 참여 확대 추진

세계 각국은 PKO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자국의 정치·경제·문화적 이익에 따른 목적을 가지고 PKO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의 추세는 PKO 활동 확대이다. PKO 활동이 증가하고 그 임무가 다양화 및 복잡화되며 UN 상비체제가 강화되고 영역이 다양화되고 있다. 한국군이 뒤처진다면 한국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지 못 할 것이다. 앞장에서 아이티, 이라크 파병국의 현황을 분석해 보아도 해외 파병 확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반도의 전쟁 발발시 세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보의 적금 역할을 하는 것이 PKO 활동이다. 이제 세계는 1개 국가의 단독 군사력으로 자국 안보를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파병 발전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상시 해외파병이 가능한 상비부대의 파병준비태세 강화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 등 선진국은 PKO 활동 임무 요구를 받았을 때 1주일 이내에 해당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했다. 군사강국들의 해외 투사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군사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대자체의 편성과 능력도 PKO 파병이 가능토록 조직되어 있다. 우리도 자체 능력을 갖추어야 될 것이다. 둘째 국익을 우선 고려하여 정부 결정으로 파병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한국군의 희생이 있더라도 군사적 임무와 전투지역에 파병하여 국가의 이익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 복잡한 파병 결정과정을 단순화하여 정부결정으로 PKO 참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나. 신속 파병을 위한 방안 개발

각국의 PKO 활동 확대와 신속파병을 앞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첫째, 신속파병을 위해 파병기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법률개선과 상비부대의 즉응태세 완비, PKO 센터 보강 등이 필요하다. 둘째는 PKO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가를 육성하고, 개인파병을 확대해야 한다. 간부교육의 학교기관이나, 간부 육성기관에서 파병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파병지원기관을 조직해야 한다. 3군 합동지원 부서 창설과 각종정보를 축적하여 차후 파병에 이용토록 한다. 넷째, 파병전투지원을 개선하여 물자 및 장비가 SET화 되고, 파병인원의 수송수단을 발전시켜야 하며 다섯째는 민군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1진 부대 파병분석에 따른 신속파병 방안에서 제시할 것이다.

제 4 장 한국군 PKO 활동

제 1 절 해외파병 개요

가. 이라크 서회부대

1) 이라크

이라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하천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루어진 지역이다. 이라크는 서남아시아의 비옥한 지형을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43.4만 km²로써 한반도의 약 2배이다. 티크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이라크를 관통하고 있다. 주요하천이나 페르시아만 쪽으로 흐를수록 소금지역을 지나게 되어 염분도가 매우 높아 곡물 생산이 어렵다. 이라크 기상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모래폭풍(Sand-storm)이다. 미국이 이라크 자유작전을 수행 시 공격작전의 명칭을 “모래폭풍”으로 선정했었는데 그 명명이 참으로 좋았다고 생각된다. 모래폭풍은 순간 풍속이 20m/s의 강한 바람과 모래가 일어 1m 앞도 볼 수 없고, 사람이 건물 외부에서는 움직이지도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만드는 공포의 대상이다. 이라크는 원유 매장량이 2000년말 기준 1,125억 배럴로써 미확인 매장량 215억 배럴을 포함하면 세계 2위 수준이다.

<그림 4-1> 이라크 지형도



2) 이라크 전쟁

이라크 전쟁은 9·11 테러에 대응한 미국의 안보전략이 변화된 것에서 유발되었다. 위협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그 위협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기 이전에 선제공격 및 독자행동을 강구하겠다는 것으로 변화된 것이다. 그리고 UN 결의 및 미국의 이라크 무장해제 요구에 대한 거부, UN 결의한 묵살 16회 등 부시의 최후통첩 무시 등이 직접적 배경이 있었다. 간접적 배경은 중동지역 안보환경 조성을 하는 것이다. 이는 이라크내 미국식 가치관을 주입하여 주변국이 영향을 받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전도 종식을 피하려 했으며, 에너지 확보라는 국가전략도 저변에 깔려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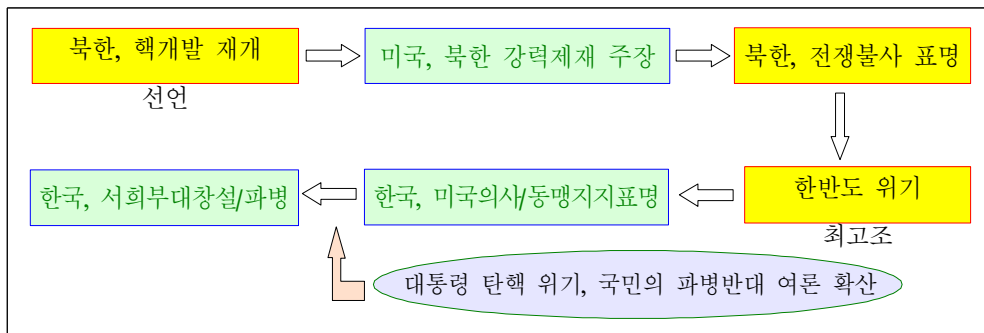
[표 4-1] 이라크 전쟁 원인 분석

구 분	세 부 내 용
직접적 원인	9-11 테러 대응한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선제공격) - UN 결의 및 미국의 무장해제 요구 무시
간접적 원인	- 중동지역 안보환경 조성을 통한 이·팔전 종식 - 안전한 에너지 자원 확보

3) 서희부대

부대 명칭은 993년 거란 침입 시 외교 담판으로 거란을 물리친 서희장군에서 유래했다. 서희부대 파병 배경에는 2003년 한반도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표 4-2] 2003년 한국 정세¹⁹⁾



위희 표에서 보듯 2003년의 한반도는 세계의 화약고였다. 심지에 불만 붙이면 폭발

19) 이우식 등 다수, 전계서 p53

하는 폭약 저장고와 같았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이 한반도 안보환경과 국익을 위한 최선의 길이었기에 국민의 반대와 대통령의 탄핵 위기의 초유의 사태까지 겪으면서 파병을 관철시켰다. 2003년 4월 국회 의결을 거치고, 4월 15일 서희 부대 창설, 4월 30일 1세대 파병, 5월 14일 2세대가 파병 되었다. 28일만의 신속한 파병으로 큰 성과를 달성했다.



나. 아이티 단비부대

1) 아이티

아이티는 카리브해에 위치한 이스파놀라 섬의 서쪽 1/3을 차지하는 공화국이다. 섬의 동쪽은 야구로 유명한 도미니카 공화국이 위치하고 있다. 아이티의 면적은 2.7만㎢로 한국의 1/4정도이다. 아이티는 산이 많은 땅이라는 뜻이며 국토의 3/4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고 1804년 노예혁명으로 이룩한 중남미 최초의 흑인 독립국가이다. 아이티의 큰 특징적 기상은 허리케인이다. 6월에서 8월 사이에 대형 허리케인이 자주 지나간다. 2008년에는 대형 허리케인이 4개나 지나가 500명 이상이 사망하기도 했다.

<그림 4-2> 아이티 지형도



그리고 현재 아이티는 잦은 쿠데타로 군대가 해체되고 경찰도 해산되어 국가의 공권력이 부재한 무정부 상태의 국가이다. 아이티는 한국 전쟁시 2천 달러의 물자를 지원했다. 현재의 시세로 환산하면 약 90억 달러 이상의 가치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나라에 대해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기회가 되었다.

2) 단비부대 파병 경과

부대명칭은 “꼭 필요할 때 알맞게 내리는 비”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다. 240명의 공병 및 의무부대로 편성되었다. 2010년 1월 12일 리터규모 7의 강진으로 20만명이상이 사망하는 피해를 당했다. UN 안보리 결의안 1908호('10.1.19)에 의거 해외파병 결정 및 국회의결 통과, 2010년 2월 6일 병력집결, 2월 10일 해상물자 출발, 2월 17일 부대창설, 2월 27일 파병으로 진행 되었다. 병력 집결에서 파병까지 21일만의 초고속 파병이었으나 지진의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이미 시기가 늦은 때였다. UN PKO 파병으로써 UN 임무단인 MINUSTAH(Mission des Nations Unies pour la Stabilisation en Haiti)의 작전통제를 받으며 각종 임무를 수행했다. 병력집결부터 파병까지 단 3주만의 준비로 신속한 파병이었기에 임무 수행뿐만 아니라 부대 장병의 생활여건도 매우 힘들었으나 모두 조국을 빛낸다는 긍지를 가지고 45℃의 폭염과 대형 허리케인 속에서도 훌륭히 임무를 수행했다.

다. 서희부대와 단비부대의 비교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서희부대는 다국적군 PKO로, 단비부대는 UN PKO로 파병 되었다. 파병 유형에 따라 파병관련 내용이 상이하다.

[표 4-3] 서희부대와 단비부대 비교²⁰⁾

구 분	이라크 서희부대	아이티 단비부대
파병 형태	다국적군 PKO	UN PKO
파병 임무	이라크 전쟁전후 복구지원	아이티 지진 재건지원
파병 요청	미 국	UN
국회동의~파병	27일 (4.2 ~ 4.29)	16일 (2.9 ~ 2.27)
국민 지지	반대여론 팽배	적극 지원
병력 구성	공병/의무 657명	공병/의무 240명

20) 이우식 등 다수, 전게서, P43

1진 부대의 파병을 두 번 모두 경험했던 연구자는 1진 파병의 신속성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 단기간의 파병준비로 그 준비상태가 미흡하여 부대전개 및 숙영지 편성, 임무수행 시 애로사항이 발행한 것이다. 정책 결정권자의 의견에 의한 신속 파병은 파병지에서의 국가 위상 추락 가능성이 높다고 느꼈다. 파병 형태에 따라 파병요청기관, 임무, 국민의 지지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부대별 파병준비부터 파병지 활동간 주요 내용을 제 2절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제 2 절 평화유지활동 부대의 파병 준비

가. 인사분야 파병준비

1) 참모부 편성 및 개선방안

해외파병 1진 부대의 파병이 결정되면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업무가 인사분야의 업무이다. 사람이 편성되어야 어떤 형태이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대의 병력 중에서도 참모부의 주요 간부 편성이 중요하다. 해외파병 부대의 규모가 대부분 500명 이내의 인원으로 편성되어 참모부의 편성도 연대급 참모 구성이 기준이 되었다. 서희부대와 단비부대 모두 연대급으로 참모부가 편성 되었다.

[표 4-4] 서희부대와 단비부대 참모부 편성²¹⁾

이라크 서희부대	아이티 단비부대
• 연대급 참모 구성 - 정작과장(공병소령),지원과장(포병소령) - 정보/작전/공사/경리/통신장교(대위) - 보급담당관(부사관), 행정병 - 통역병(영어2, 아랍어1)	• 연대급 참모 구성 - 정작과장(공병소령),지원과장(공병소령) - 정보/작전/공사/경리/통신장교(대위) - 보급담당관(부사관), 행정병 - 통역병(영어4, 불어1)

표에서 보듯이 일반참모(인사, 정보, 작전, 군수)중에서 소령은 정작과장(정보+작전), 지원과장(인사+군수) 2명뿐이다. 해외 파병 1진 부대는 연대급 부대를 창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업무량을 취급한다. 파병 2진부터는 1진이 이루어 놓은 부대 편성과 업무를 유지 운영하면 되지만 1진 부대는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내야 되는 업무이다. 특히 전투근무지원분야를 담당하는 지원과장에게 그 업무가 너무 과중하여 단기간의 파병준비로는 1진 부대파병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인사과장과 군수과장은 소령으로 편성하고 그 과의 실무담당자도 대위급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단비부대 및 서희부대 두 개의 부대가 편제에 없던 인사장교와 보급장교를 모두 비편제로 운영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1진에는 인사과장과 군수과장을 소령으로 편성하고, 인사장교와 보급장교도 대위로 편성하여 파병하고, 2진부터는 인사군수를 통합하여 지원과장으로 운영하고, 인사/보급장교도 지원장교로 통합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통역병도 소수인원

21) 조영기 등 3명(2010), 『이라크서희부대1진귀국보고서』, 국방대 PKO센터, p77

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런 인원으로는 타 국가와의 업무수행에 제한이 많다. 기능별 참모 UN업무, 시장업무, 타국가 방문, 회의 참석 등 실소요는 10명 정도 필요하다. 따라서 통역병을 증가해야 한다. 개선방안으로는 참모부별 행정병을 영어 통번역이 가능한 자원으로 선발하는 것이다. 통역가능 병사는 야전부대에 많이 산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통역병의 선발 경쟁률이 10대 1을 능가할 만큼 자원이 충분하였다. 이처럼 인적 자원이 충분하니 많은 어학 자원을 선발하여 언어적 장벽을 해결해도 좋을 듯하다.

구 분	실 태 (서희/단비부대)	개 선 방 안
간 부	• 일반참모 소령 2명 • 참모부 대위 실무자 미편성	• 일반참모 소령 3명 (정작과장, 인사과장, 군수과장) • 대위 실무자 2명(인사, 군수)
병 사	• 통역병 5명(영어4, 불어1)	• 통역병 5명 • 통번역 가능한 행정병 선발

2) 인사 분야 세부 과병 준비사항

- ① 병력 소집 ② 신체검사/예정접종 ③ 선발대 출국 준비
 ④ 창설식 준비 ⑤ 근무평정 준비 ⑥ 여권발급 ⑦ 부대행사/비품
 ⑧ 부대 단결행사 ⑨ 귀국 후 간부 보직 ⑩ 기 타

가) 병력소집 시 집결부대/시간 전과

병사들은 소집되는 부대의 명칭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단비부대의 경우 집결 장소가 특임단 교육단(부천)인데 특전사 교육단(경기 광주)으로 집결하는 병사가 있었다. 당일에 피복체춘, 신상명세서, 여권사진 촬영 등을 실시한다. 이는 차후 임무 수행의 데이터로 활용된다. 피복체춘은 과병 1진 부대의 본대와 선발대가 3주 이내에 과병되므로 500여명의 각종 피복을 과병 전까지 맞추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병력소집 시 접수처는 4개소 이상 설치하여 접수지연을 예방하고 신상명세서는 세 부적 내용으로 1장만 작성하여 복사 후 지휘관에게 배부하면 될 것이다.

나) 신체검사와 예방접종

과병 장병 스스로도 자신의 몸속에 가지고 있던 질병을(간염, 암, 고혈압 등)알

지 못했는데 신체검사 시에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질병이 발견되면 과감히 인원을 교체하는 것이 좋다. 파병의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파병인원이 질병이 있어도 어떻게든 파병을 가려고 하는데 이는 차후 파병 후에 지휘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 신체검사 결과가 1주내지 2주일 정도 소요되므로 신체검사가 늦어지면 파병 전까지 인원을 교체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 선발대 출국 준비

복장, 여권, 비행티켓, 신체검/예방접종 등이 있다. 선발대는 20명~50명이 민간 항공기를 이용하여 파병되므로 언론 취재도 많다. 따라서 이들의 복장 등 준비사항은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여권 발권 시에도 공문으로 외교통상부에 사전 협조해야 되며, 성명 기입 시 영문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라) 부대 창설식 준비

창설식 이전 파병 전투복 및 UN 지급품(베레모, 스카프, 완장 등)의 국내 수령 확인, 주요인사 참석여부, 언론 취재를 위한 미담사례 발굴, 상급부대 계획 등을 확인해야 한다. 서희부대의 경우 창설식 시 사막복이 제작되지 않아 기존의 얼룩무늬 전투복을 착용하였다. 단비부대의 경우 창설식 전날 밤에 UN 지급품이 도착하는 다급한 일도 있었다.

<그림 4-3> 서희부대 및 단비부대 창설식



마) 근무 평정 준비

1진 부대의 경우 해외와 국내와의 군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전자 평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서면 평정 양식을 준비하고 특히 해군과 공군은 평정 양식이 육군과 상이하므로 확인해야 한다.

바) 여권발급

선발대 인원을 우선 처리하고 본대 인원을 차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발급 기간은 3일 1주일 정도 소요된다. 정확한 영문 이름의 확인이 중요하다. 파병 간부들의 경우 개인적으로 여권을 발급해 있는 인원은 공무 복수여권으로 재발급해야 한다. 병사는 단수 여권을 발급 받으므로 1회 사용이 가능하다. 여권은 인사 분야 담당자가 통합 관리하는 것이 좋다. 분실 및 도난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사) 부대행사 및 비품 준비

파병기간이 6개월이므로 명절이 포함된다. 부대행사용 제기류, 각종과별 종교행사 도구, 태극기, 플랭카드, 체육 기자재 등이 필요하다. 태극기는 대형, 중형, 소형 등 크기별로 다양하게 충분한 수량을 준비해야 한다. 월 2장 정도의 소모비율로 고려하면 된다. 파병지역은 고온 다습, 강한 바람이 많아 태극기의 훼손이 심하다.

아) 부대 단결 행사

수십 개의 부대에서 소집된 부대원은 단결력이 약하다. 상호 이해와 단결을 위해 부대 인근의 산행, 체육대회, 식사 등을 실시하는 것도 좋다. 파병지역에서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사람간의 갈등인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휘관을 중심으로 부대원간의 단결행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희부대는 파병준비기간이 1개월가량 되어 단결행사를 실시했으나, 단비부대는 단결행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파병되었다.

<그림 4-4> 서희부대 단결 행사



서희부대 단결 산행(태청산)



서희부대 위로행사(미스코리아 방문)

자) 귀국 후 간부보직

병사들은 귀국 후 자대로 복귀하면 별 문제는 없다. 그러나 간부들의 경우 특히 모체부대가 아닌 중앙 선발된 인원은 귀국 후 보직이 중요하다. 부대 및 보직 결

정이 2개 분기 이전에 결정되므로 파병기간 6개월을 고려하여 파병 출발 전에 부대/보직 관련 사항을 각 군 본부로 확인해야 한다.

카) 기타 병력 구성의 자원분석

지휘관의 부대 운영에 좋은 자료가 된다. 일부 부대는 관심병사를 파병 부대원으로 보내 파병 후에도 병사 관리에 지휘관들이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다. 문제가 있는(건강, 애인관계, 가족문제, 특이 성격 등) 병사는 발견 즉시 심의를 거쳐 교체하는 것이 좋다. 파병지의 연락처(전화번호, 주소)를 확인하여 장병의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 단비부대의 경우 병사의 부모님께서 보이스 피싱을 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부대로 전화하여 해당인원과 직접 통화 후 보이스 피싱이 확인되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파병 교육 기간 중(약 1개월) 외박, 휴가를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교육이 필요하다. 1진의 파병인원은 안전사고로 인해 인원을 교체하기가 힘들다. 차후로는 1진의 파병인원도 예비인원을 선발할 필요가 있다.

나. 정보분야 파병준비

① 파병지역 정보획득 / 작전환경 분석 ② 군사보안

파병지역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해외 파병 1진 부대의 파병지는 생소한 지역이 대부분이다. 2003년 당시 이라크라는 나라와 이라크 자유작전에 대한 정보와 파병 예정지에 대한 정보는 상세하지도 않고,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실적 정보 밖에 없었다. 현지정세, 위협세력, 기후와 기상, 지형정보, 문화, 부대 주둔지 등에 대한 정보지원이 절실했다. 정보분야에 있어서는 초보자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정보분야 예산 확인 및 물품 준비사항이 있다. 정보분석낭셋, 현지 정보 활동비 등 예산과 파병지에서의 물품 구매를 계획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제한적이다. 해외 파병지는 저개발국가이거나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라도 국가 행정력 및 경제 체제가 기능 상실되어 물품구매는 불가능에 가깝다. 단비부대의 정보분야 디지털 카메라 등도 현지구매 계획이었으나 현지에서의 구매는 못하고 말았다. 기상 정보 제공도 중요하다. 이라크는 최고 59℃, 아이티는 49℃까지 오르는데 어느 정도인지 파병 장병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트랙을

내리는 순간 찜질방을 들어서는 느낌이었다. 사전에 이런 기상정보를 알았다면 간접 체험의 행사라도 했을 것이다. 군사보안 분야는 현지에서 활용할 ID 카드를 제작하고 각종 전자 통신 장비에 대한 보안 조치가 중요하다. 장병들이 노트북, MP3 등을 지참할 경우에 등록을 하고 보안 서약서 집행 및 주 1회 저장자료를 점검해야 한다. 정보분야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파병이 예상되는 국가에 대한 사전 정보 획득 및 관리가 필요하다. 국방부나 정보본부, 국방대 PKO센터, 합참 해외파병과 등의 기관에서는 세계 각국의 대륙별 파병 예상 국가에 대한 정세, 지형, 기후와 기상, 위협세력, 문화, 경제 등을 파악하여 획득된 첩보를 관리하며 파병부대의 부대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제공해야 한다. 사전 획득된 정보는 파병이 결정되었을 때는 책자로 출간하여 즉시 제공토록 해야 한다. 둘째 정보 분야의 필요 물품을 한국에서 구매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파병지에서의 물품구매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림 4-5> 단비부대 현지인 초빙 교육



단비부대 아이티 현지인(미군 군무원 근무)

다. 작전분야 파병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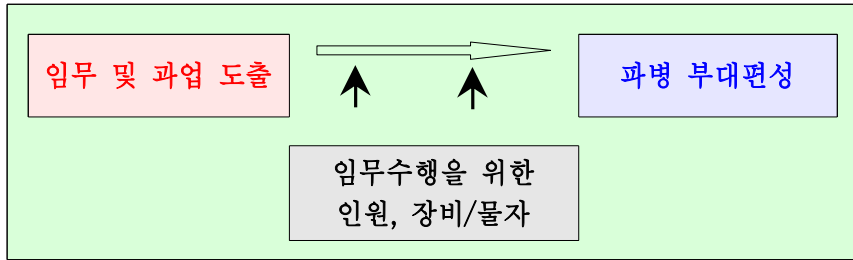
- | |
|--|
| ① 부대 편성 ② 지휘관 견장 수여식 ③ 파병전 교육
④ 임무수행철 작성 ⑤ 지휘통제실 구성 ⑥ 파병관련 보고 |
|--|

1) 세부 사항별 준비 실태

가) 부대 편성

파병 현지 실사단의 사전조사와 임무 분석, 현지 임무 수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대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4-5] 부대편성의 절차



서희부대 및 단비부대, 두 개의 부대 모두 파병준비기간이 너무나도 짧았다. 부대의 임무와 세부과업이 제대로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대편성이 이루어졌다. 특히 단비부대의 의무반은 현지 실사단의 사전조사에 따라 인원변동이 많았다. 최초에는 5명으로 편성되었다가 현지조사 후 현지인의 의료진료를 수행하기 위해 17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이후 추가로 간호장교 및 방역장교가 편성되어 22명으로 인원이 확정되었다. 인원의 변동이 있었으나 장비 및 물자는 17명 기준으로 편성되어 부족한 장비 및 물자가 부족한 상황이 있었다. 아이티에서의 재건지원을 위한 수행과업이 제대로 판단되지 않아 1진 부대편제를 2진 부대편제 시 추가 및 삭제되는 인원이 있었다.

- 공병대 15DT 5대, 대형지게차 1대, 대형트레일러 1대 : 토목 공사 임무 증가
- 의무팀 군의관 3명 감축, 의정장교 추가
- 경비복구지원대 4명 감축 : 경비소요 감소

나) 지휘관 견장 수여식

부대 창설식 이전에 중대장으로부터 대대장 및 부대장까지 상급자에 의한 지휘관 견장 수여식을 실시한다. 지휘관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의미 있는 행사이므로 가능하면 전 병력이 집결된 상태에서 행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다) 파병 전 교육

파병 전 교육은 상급부대 통제 과목, 강사초빙, 위탁교육, 파병 유경험자 교육, 주특기 교육 등이 있다. 서희부대와 단비부대의 파병준비기간이 3주 정도로 촉박함에 따라 교육시간을 모두 소화해 낼 수는 없었다. 따라서 교육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단비부대의 주요 직위자에 대한 선소집 교육이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단비부대의 주요 참모 간부는 파병 전 교육에 대부분 참석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

<그림 4-6> 파병 전 교육



파병 전 교육 시 각종 충기류는 충기별로 전원이 영점사격을 실시해야 한다. 서희부대는 상무대에서 파병을 준비하며 훈련장과 교탄이 보급되어 사격을 실시했으나 단비부대는 짧은 파병준비 기간으로 영점사격을 실시하지 못했다. 주특기 교육은 공병 관련 주특기, 의무관련 주특기, 정비/운전, 통신, 취사 등이 있다. 해외 파병 부대의 특성상 주특기 실력이 부족한 장병이 있다면 이는 파병 부대의 능력으로 직결된다. 선발된 병사들 중에서 일·이병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파병 준비기간(2 ~ 3개월)과 파병(6개월), 파병 복귀 후 위로휴가(25일) 등을 고려 시 상병 이상의 계급을 선발하기에 제한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특기 병사는 그 능력 향상을 위해 1:1 간부교육도 필요하다.

라) 임무수행철 작성

해외 파병 1진의 부대원으로서 경험을 했던 연구자는 자료의 존안 중요성을 실감했다. 2003년 서희부대 파병 준비 시 미흡분야가 2010년 단비부대 파병준비 시 동일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7년이나 경과되었으나 Know-how 축척이나 자료 존안은 없었다. 담당자별 파병준비 방법 및 실수했던 사항, 업무 협조선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임무수행철을 작성하고 이 자료는 파병부대에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

마) 지휘통제실 구성

파병 후 타 파병국가의 주요 직위자, UN 및 다국적군 주요 직위자들의 방문이 많다. 부대의 운영과 현 상황, 부대 소개 등을 하는 장소이기에 각종 장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사소한 준비물로는 달력, 시계 2개(현지시간, 한국시간), 방명록, 상황판,

지도, 태극기, 대통령 존영 등이 필요하다. 부대의 운영과 조정 통제를 위해서는 상황 보고용 스크린, 빔프로젝트, PC, 프린터, 전화기, 인터넷, 방송 시스템, 책상, 의자 등이 필요하다.

<그림 3-7> 단비부대 지휘통제실 구성22)



바) 파병관련 상급부대 보고

파병부대 1진 참모부의 가장 큰 업무가 상급부대에 대한 파병관련 보고이다. 잦은 보고로 인해 일반 참모부의 과장 및 실무자들은 파병준비와 파병보고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는 힘겨운 기간을 보냈다. 파병준비기간 동안 일반 참모부 간부들은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기도 했다. 상급부대에 대한 보고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 4-6] 상급부대 파병보고

구 분	단 비 부 대	서 희 부 대
횟 수	6	5
주요보고	• 육본, 합참, 특수전사령부 • 공병교, 연합사, 청와대	• 육본, 합참, 2작전사령부 • 9군단, 공병교

파병 준비기간이 3주 정도였다. 1주일에는 병력 소집 및 업무 파악을 해야 한다. 따라서 상급부대 보고는 2주 동안 5회에서 6회 가량 이루어진다.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면 2일에 1회의 보고를 한 것이다. 단비부대장의 경우 1일 300km 이상의 이동거리

22) 조영기 등 3명, 전제서, p82

를 보이기도 했다. 육본은 인사/군수분야의 전투지원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합참과 특전사는 작전/정보 분야의 임무수행 준비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파병 1진 부대는 짧은 파병준비기간 동안 정세파악, 임무 염출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되기에 보고 횟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2) 작전분야 개선방안

작전분야 준비사항은 파병 주관부서의 업무로써 개선할 사항을 제시해 본다. 첫째, 부대편성을 위한 임무/과업 도출이다. 파병 1진 부대가 짧은 파병준비기간 동안 임무/과업 도출을 해야 한다. 파병의 첫 단추이다. 사전조사가 잘되어야 부대편성이 제대로 되고 부대의 파병 목적과도 부합되게 된다. 둘째는 파병 전 교육의 강화이다. 최소 1~2개월 정도는 사격, 체력단련, 주특기 교육 등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파병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파병 교육은 선소집 요원 교육과 본대 소집 교육으로 구분되어 파병기간이 짧더라도 선소집 교육은 필히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는 임무수행철 등 자료 존안이다. 파병 1진 부대는 그 나름의 파병준비 Know-how가 있고, 특성이 있다. 1진 부대의 임무수행철 및 일일결산철 등을 잘 보관하여 타 파병 1진 부대에게 이어져야 한다. 넷째 파병관련 보고의 축소이다. 파병 1진 부대는 보고 이외에도 파병준비가 연대급 부대의 창설과 맞먹는다. 따라서 실직적인 파병준비 여건보장을 위해 보고를 축소해야 한다. 합참 작전본부와 육본 정작부에 보고하는 것만으로 보고를 갈음하는 것이 합당하리라 본다. 이는 해외파병부대에서 결정할 수 없으므로 합참 해외파병과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라. 군수분야 파병준비

- | |
|--|
| ① 업무 협조선 확인 ② 피복준비 ③ 장비류 준비
④ 총기/탄약 준비 ⑤ 급 식 ⑥ 병력 및 화물 수송 |
|--|

1) 세부 사항별 준비

가) 업무협조선 확인

해외파병 1진 부대의 파병준비 기간은 1개월 이내로 비교적 짧은 편이다. 이 기간에 부대 창설과 파병준비를 해야 한다. 1진 부대의 모체부대가 병력소집 전에 물자 및 장비소요를 육본 군참부 등에 건의한다. 파병준비기간 중 추가적인 소요도 받

생하였는데 가장 큰 애로점은 각 종별 업무담당자들을 찾아내고 업무수행체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2003년 서희부대 창설 때도 육본, 3군지사 등과 업무를 협조하였다. 파병부대 창설에 대한 협조선 확인이 어려웠다. 2010년 단비부대의 창설에서도 동일한 상황이었다. 육본, 3군지사, 방사청 등 업무협조선이 다양하고 복잡하였다. 참고로 주요 협조선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7] 단비부대 파병 업무협조선²³⁾

구 분		지 원 부 서	구 분		지 원 부 서
총 괄		육본 군참부 군수기획과	조 달 지 원	전투복	희림상사(용산)
보 급 지 원	근무지원	특전사관리처, 국평단군수과		전투화	군인공제회
	개인장구/피 복/급식	3군지사 10보급대		야전상의	부산의용촌
	수리부속, 화 기, 통신	3군지사		활동복	평화용사촌
수 송	항공화물	국군수송사령부항공과		개인장구류	동화기업/정우실업
		대한항공	수 송	해상화물	국군수송사령부해상과 2보급단 기동저장과

지원과장(소령) 1명과 보급담당관이 위의 업무를 협조 및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위의 표와 같은 업무협조선을 확인하는데 1주일 소요되기도 했다. 2010년 당시 파병 1진 부대에 대한 전담 지원부서나 부대가 없었던 점이 아쉽다. 현재는 상비부대인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육본 등 3군 본부의 군수분야 통합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 피복 준비

파병준비 중 가장 번거롭고 까다로운 사항이 피복관련 업무이다. 신체검사 불합격자, 복무 부적응, 추가인원 선발 등의 인원 변동이 많았다. 서희부대 25명, 단비부대 1명이 교체되고, 17명이 추가되는 등 인원 변동이 생겼다. 이로 인해 피복채운은 2회 실시했으며 피복류의 납품 업체도 서울과 부산 등 지방에 위치하여 수치조정이 어려웠다.

23) 조영기 등 3명, 전계서 P39

<그림 4-8>. 단비부대 피복준비²⁴⁾

특히 전투복은 더욱 곤란한 경우를 겪었다. 서희부대는 사막복인데 사막복 피복 원자재가 부족하여 부대 창설식에 일반 얼룩무늬 전투복을 입고 창설식을 실시했으며, 2벌의 전투복도 동계 피복으로 제작되어 50℃가 넘는 열사의 땅 이라크에서 우리 1진 장병들은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했다. 단비부대의 경우 디지털 전투



단비부대 피복체훈

복은 원자재 부족으로 선발대 인원 50명에게 본대 인원의 전투복을 빌려주기도 했다. 파병 1진 부대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는 피복류를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1진 파병도 1개월 이상의 파병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신속파병을 위해서는 피복류의 500명이상 물량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다) 장비류 준비

공병부대가 주를 이루는 1진 파병은 장비 수급도 쉽지 않다. 서희부대는 이라크 인접국인 쿠웨이트에서 현지구매/납품으로 그나마 장비 보급이 좋은 여건이었다. 단비부대는 전국의 공병부대에서 사용하던 건설 장비를 집결시켰다.

[표 4-8] 단비부대 장비현황²⁵⁾

구 분	기 동 장 비	건 설 장 비	일 반 장 비
수 량(대)	25	31	10
주요장비	•중형버스, 구급차, 위생처리차, 방역차, 급수차 등	•도자, 굴삭기(8), 페이로다,로라,시추기, 지게차, 15DT 트럭	•취사트레일러, 발전기100kw 등

단비부대의 장비는 야전부대에서 사용 중이던 장비를 집결하였기 때문에 운행 상태는 양호하지 않았다. 또한 제조회사, 생산년도, 생산국이 상이하여 수리부속 조달이 불가능하여 동류전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굴삭기 8대의 경우 2대는 중국산으로써 부속품 구매가 불가해서 고장 시에는 수리도 여의치 않았다. 공병부대에 건설장비를

24) 조영기 등 3명, 전계서, p41

25) 상계서, p43

보급하여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비는 도색을 해야 한다. UN의 글씨는 검정색으로, 바탕은 흰색으로 도색을 해야 한다. 이는 파병에 대한 UN의 경비보전을 100% 받을 수 있다. 도색을 하지 않을 경우 경비보전은 1/3 밖에 받지 못한다.

라) 총기/탄약 준비

군부대의 해외 파병이라 개인의 군장류는 기본적인 필수 보유 품목이었다. 서희부대와 단비부대의 탄약 준비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9] 단비부대 탄약현황²⁶⁾

구 분	단비부대 (UN PKO)	서희부대 (다국적군 PKO)
5.56mm 탄	5,040발	229,740(개인별 420발)
9mm 권총탄	200발	900발(개인별 36발)

서희부대는 개인별 탄약의 보급기준을 정하여 그에 따른 인원을 대비하여 탄약을 보급하였다. 그러나 단비부대는 개인별 지급 탄약의 기준도 없이 5.56mm 보통탄은 3박스, 9mm 권총탄은 1박스만을 부대 보유했다. 단비부대가 비전투지역의 재난 복구의 UN PKO라고는 하지만 군인의 파병 시 기본 휴대량(개인별 140발)은 보급해야 될 것이다. 선발대의 파병은 민간 항공기를 이용하는데 이때는 필히 항공사와 특수 포장 방법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마) 급 식

급식류는 장비의 사기진작과 밀접한 문제이다. 해외에 나가보면 한국음식이 그리워지기 마련이다. 파병 1진 부대는 현지의 기후 및 기상과 싸워 적응을 해야 되기에 잘 먹어야 한다. 1진 부대는 파병 초기에 전투식량을 주로 취식하게 되지만 가능한 한국 음식을 먹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히 김치, 고추장은 충분한 양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국내 소비량의 2배 이상 확보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서희부대의 경우 김치는 6,190kg, 단비부대는 고추장 1,080kg과 김치 8,280kg을 보급 받았다. 급식 담당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김치와 고추장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바) 병력 및 화물 수송

해외 파병은 한국과 수천km 떨어진 지역으로 나가서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수송문제는 파병 예산과 신속한 파병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서희부대와 단비

26)조영기 등 3명(2010), 전계서, p42

부대의 수송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10] 서희부대와 단비부대의 수송방법²⁷⁾

구 분	단비부대 (UN PKO)	서희부대 (다국적군 PKO)
인원수송	• 민간 항공기(1회수송)	• 민간 항공기(2회수송)
화물수송	• 민간 화물기 • 민간 선박 해상 수송	• 민간 화물기(2회수송)

화물 수송 중 단비부대의 경우, 민간 선박을 이용한 것은 건설/기동/일반장비들을 수송하기 위한 것이었다. 서희부대는 장비류를 쿠웨이트에서 현지구매 했기에 민간 화물기만 이용했다. 민간 화물기의 이용에는 화물 적재량이 제한되어 임무수행을 위한 물량을 모두 수송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대략 100톤의 물량을 수송할 수 있는데 부대의 물량은 2배 이상 많았다. 또한 민간 선박과 항공기를 이용하다보니 계약이 쉽지 않았고, 부대에서 요구하는 시기에 맞추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1진 부대의 신속한 파병을 위해서는 우리 공군의 수송기와 해군의 수송 선박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비를 발전시키고, 주변국과의 영공, 영해의 통과를 사전에 승인 받도록 해야 한다.

2) 군수분야 개선방안

군수분야의 준비사항 실태를 알아보았다. 보다 신속하고 임무수행이 가능한 파병 1진 부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군수분야 파병업무 지원 통합부서의 신설이다. 해외 파병을 전담 총괄하는 합참의 해외파병과는 10년 전 신설되었으나 해외 파병 지원부서는 없다. 해외 파병이 육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해군과 공군의 3군 합동파병지원과(대령급)의 신설을 제시한다. 합동파병지원부서가 있다면 업무 협조/통제/확인이 용이하여 신속파병 준비가 용이할 것이다. 둘째는 신속파병 준비이다. 이는 피복류와 건설/기동/일반 장비류를 파병 상비부대원인 3천명 부대수준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신품으로 구매하여 국제평화지원단에서 교육 훈련으로 활용하다가 파병소요 발생시 1진 부대가 이를 파병장비로 이용하는 것이다. 셋째, 탄약은 필히 개인 기본휴대량을 지급해야 한다. 넷째는 한국 음식(김치, 고추장)의 보급량을 늘린다. 다섯째는 수송수단을 군 수송장비를 이용토록 능력을 향상시킨다. 민간 소송장비의 계약 지연, 수송지연 등을 예방하여 신속 파병이 가능토

27) 조영기 등 3명, 전제서, p79

록 하고 파병지역 주변국가의 영공과 영해를 통과할 수 있도록 평시에 협약을 맺어 두는 것이다. 위의 사항 5가지는 신속파병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다.

마. 공사분야 파병준비

① 주둔지 조성준비 ② 공사자재 준비

1) 세부 사항별 준비

가) 주둔지 조성 준비

단비부대 및 서희부대가 파병되기 전 부대의 주둔지가 현지 조사단의 사전설사로 선정되었다. 주둔지 조성을 위한 확인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11] 현지조사단의 사전조사 점검사항 및 1진 부대 적용²⁸⁾

구 분	고려요소	단 비 부 대 (UN PKO) ²⁹⁾	서 희 부 대 (다국적군 PKO)
영구건물 활용가능	천막, 컨테이너 준비	24인용천막(한국산)	24인용천막(미국산)
전 력 (전압, 주파수, 전류)	본국 가전제품 이용가능 여부	발전기 8대 수송	현지구매 발전기이용
급수(수질, 수량)	정수차, 급수차, 시추기 보급여부	정수차, 급수차, 시추기 수송	미군급수시설 이용
화장실 (재래식, 수세식, 처리방법)	화장실 설치자재, 위생처리차 준비	간이화장실, 위생처리차 운용	간이화장실 설치, 인분 소각/매몰처리
목욕/샤워	목욕트레라, 시설설치 자재	간이샤워장 설치	미군샤워장이용 후 간이샤워장 설치

현지조사단의 점검사항에 따른 단비부대와 서희부대의 준비사항도 표와 같다. 파병 1진 부대는 공병부대가 대부분이므로 주둔지의 면적은 단비부대의 경험과 서희부대의 경험을 근거로 약 5만㎡가 소요된다. 이 면적은 생활지역, 차량 주차/정비, 식당, 운동장, 경계시설, 병원시설, 오·하수 시설 등을 고려한 것이다. 파병 1진 부대는 이 면적을 확보하도록 파병국가와 UN과 협조해야 한다. 이라크 서희부대는 60만㎡, 아이티 단비부대는 2만㎡의 부지를 확보했었다. 단비부대는 2진에서 더 확장되었다.

28) 육군본부(2004), 『해외파병 군수지원』, 교육참고 4-0-1, p57

29) 조영기 등 3명(2010), 전계서, p45

나) 공사자재 준비

파병 수송수단으로 민간 항공기를 이용하다보니 약 100톤으로 물동량이 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공사자재의 물동량도 제한을 받았다. 단비부대에서의 공사자재는 UN 아이티안정화 임무단(MINUSTA)에서 보급한다는 원칙이 있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보급은 그 기간이 약 1개월간 소요되어 공사 임무 수행을 적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 수송수단을 확대하여 공사자재를 한국에서 구매하여 수송토록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2) 공사분야 개선방안

공사분야의 개선방안은 주둔지 편성 간 확인사항의 개선이다. 첫째는 주둔지의 면적을 5만㎡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생활관, 운동장, 장비의 주차장 및 정비 공간, 창고, 식당, 체육관 등을 고려한 면적이다. 주둔지 부지에 대해서는 UN과의 협조뿐 만아니라 현지주민과 현지 공공기관과의 확인을 해야 한다. 파병부대가 현지에 도착하기 이전에 선발대에 의해 부지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고 이를 문서화하여 허가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단비부대의 주둔지 조성 간 현지주민이 4회나 부대를 찾아와 자신의 땅이라며 사용비를 요구하기도 했다. 아이티 레오칸 시장의 허가서를 보이자 돌아가곤 했다. 땅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리 등은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셋째, 공사자재(못, 전선, 드릴, 목재, 공구류 등)는 수송수단의 물동량이 가능하다면 다양하고 충분한 양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현지에서의 물품구매는 제한적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바. 기타분야 파병준비 및 개선방안

1) 위성 통신분야의 군전문가 육성

서희부대와 아이티 단비부대의 위성 통신은 민간 통신 기술자들이 전담했다. 현재 파병중인 아프칸 오쉬노부대 등 대부분의 부대에서 민간 통신기술자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파병지가 대부분 비전투지역이므로 안전이 확보된 상태이다. 민간기술자를 주둔지에서 함께 지낼 수 있다. 그러나 전투지역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면 민간인이 파병부대와 동행할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정보통신병과에서는 위성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군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술자의 수급이 늦어진다면 한국과의 지휘통신이 곤란할 것이다.

2) 정부합동 실사단 규모의 확대

정부합동 실사단은 외교통상부 과장급, 파병부대장, 해외파병과장 등 10여명으로 구성된다. 실질적인 파병부대의 파병준비 사항을 참모기능별로 확인하기에는 전문성도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하다. 파병준비의 가장 기초 자료가 현지 조사단의 결과이다. 따라서 실사단에는 해외 파병 부대의 작전, 정보, 인사, 군수 실무자도 포함되어야 한다.

3) 한국 홍보물 준비

해외 파병 시 타 파병국가와의 친선교류, UN 주요 직위자의 부대 방문 시 한국을 소개하는 동영상 준비와 기념품 준비도 중요하다. 서회부대에서 준비했던 기념품들은 서회모자(500개), 넥타이 핀(30개), 각시인형(10개), 기타기념 뺏지(1500개), 태극기 뺏지 2종류(각각 1000개), 기념 코인(700개) 등이 있었다.

사진 촬영기법이나 동영상 편집기술을 숙달하고 태권도, 사물놀이 등의 자재준비와 시범숙달이 필요하다. 현지에서의 물품 구매는 제한됨을 여러 번 언급했다.

<그림 4-9> 서회부대 사물놀이³⁰⁾



서회부대 한국의 날 행사(사물놀이)

30) 이우식 등 다수(2004), 『이라크 서회부대 1진 귀국보고서』, 국방대 PKO 센터, P251

제 3 절 평화유지활동 부대전개

가. 선발대 운용

해외 파병 1진 부대는 현지 정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파병되는 부대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대의 대규모 병력이 낮은 곳에 파병되어 갈팡질팡하는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선발대의 운용은 중요하다. 단비부대와 서희부대의 선발대 운용은 아래와 같다.

[표 4-12] 단비부대와 서희부대의 선발대 현황

구 분	단비부대 (UN PKO)	서희부대 (다국적군 PKO)
인 원	1차선발대 : 30명 - 지원과장 등 기능별 1~2명 2차선발대 : 20명 - 공병대장 등 기능별 1~2명 50명(장교13, 부사관7, 병30)	- 선발대 : 10명 - 정작과장, 통역장교, 공사장교, 보급관 등 10명(장교9, 부사관1)

<그림 4-10> 단비부대 선발대 이동 및 천막 설치³¹⁾



단비부대 선발대이동(러시아항공기)

단비부대 선발대 천막 설치

위의 표에서 보듯이 단비부대는 1차, 2차 선발대로 편성하였다. 단비부대의 1차 선발대는 UN 참모부와의 업무협조가 주임무였으며, 2차 선발대는 숙영시설 설치 및 본대 파병준비 등이 주임무였다. 이는 주둔지의 선정만 되었을 뿐 부대 주둔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부 20명, 병사 30명으로 선발대를 편성하였다. 단비부대의 선발대는 차량도 없는 상태에서 주둔지 인근에 파병된 스리랑카

31) 이우식 등 다수, 전게서, P75

와 캐나다로부터 차량을 지원 받았다. 선발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차량은 필수적이다. 차량제한으로 UN 임무단과의 업무협조도 지연되었다. 한편 서희부대는 다국적군의 종주국인 미국과 사전협조가 되어 숙영시설과 주둔지 부지 등이 확보된 상태였다. 서희부대의 선발대는 간부로 편성하여 동맹국과의 업무협조가 주임무였다. 파병 선발대는 임무식별, 지휘관계 확인, 업무협조선 확인과 본대전개 준비를 위한 숙영지, 임시 급식, 차량협조, 경계제공지원, 본대 화물수송 협조 등을 확인한다. 미군의 적극적 지원으로 별다른 문제없이 선발대의 업무가 추진되었다.

나. 선발대 운용 개선방안

선발대 인원 편성 및 적절성 개선사항이다. 단비부대 선발대 50명 중 병사는 30명이었다. 본대의 전개준비를 위한 천막 설치를 위해서는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선발대의 주임무는 천막설치보다 UN 및 다국적군 지휘부/참모부와의 업무협조와 임무 염출이다. 또한 단비부대의 2차 선발대는 의료인원이 7명 편성되었다. 이는 과도한 면이 있다. 의료장비 및 약품이 없는 상태에서의 현지인 진료는 제한되었다. 현지인 의료진료는 UN의 임무단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임을 몰랐던 것이다. 일정한 기준의 인원, 장비, 약품을 갖추어야 승인이 난다. 따라서 해외 파병 1진부대의 선발대는 공병 및 기능별 간부위주로 편성하는 것 더 효율적이다. 선발대의 이동시 민간 항공기를 이용하였는데 이때 총기/탄약, 각종 물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선발대는 약 10 ~ 20명 정도가 적당하리라 본다. 둘째는 선발대의 차량 이용 방안 강구이다. 단비부대의 경우처럼 선발대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제한적이라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했었다. 타파병국의(스리랑카, 캐나다) 지원차량은 단지 2대였다. 간부들의 업무 협조도 어려웠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지에서 임대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선발대의 운용이 1개월 이내이므로 1개월간 임대차량을 활용하는 것은 가장 현실적 방안이 될 것이다.

제 4 절 평화유지활동 부대 파병간 주요활동

가. 인사분야 주요활동

①인사관리 ②안전관리 ③포상 및 징계 ④사기 및 복지 ⑤인사 근무

1) 세부 사항별 준비

가) 인사 관리

해외 파병에서도 병력관리는 한국에서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병력들의 기본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표준전자결재와 온나라 시스템을 운용하였다. 병력 자력관리와 일일병력 보고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인사관리는 평정과 진급에 관련된 사항이다. 평정은 6개월 파병 중 2회 실시하게 된다. 해외 파병 1진 부대는 평정 계통도 작성을 최초로 하게 되므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편제표와 상이한 간부의 보직이 있는지, 계급이 정확한지 등을 확인한다. 해군과 공군은 평정을 서면으로 실시할 수도 있기에 이를 확인한다. 간부들 중 진급대상자는 지휘추천서를 인편으로 육본에 접수시켜야 한다. 해외에서 인편으로 서류를 발송하는 것은 곤란하고 번거로우며 장시간 소요된다. 따라서 군용 fax 및 전자메일을 이용한 발송으로 개선되었으면 한다. 병사들의 진급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진급을 시킨다. 다만 인원에 맞게 계급장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나) 안전 관리

해외파병 1진의 부대는 파병 현지의 자연 환경과 현지인이 신기하여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한다. 해외 파병 부대의 인명사고가 난 부대가 있다. 과거 UN PKO로 파병되어 인명사고는 5명이 있다. 이라크에 파병된 어느 부대는 장병이 현지인에게 욕설을 가르쳤는데 이 욕설을 현지인으로부터 듣게 되자 흥분하여 충기를 잘못 사용하여 현지인의 사망사고가 난 것이다. 현지인에 대한 욕설을 가르치는 일은 단비부대에서도 있었다. 단비부대 장병들이 체력단련 중 장병들에게 욕설을 하는 현지인 어린이를 보았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어린이는 그 의미를 모르고 했던 장난의 말이었을 것이다. 현지인에게 좋은 인사말을 가르치면 좋았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웠다. 사고예방을 위해 음주를 통제하고 부대 행사시에만 허용해야 한다. 장병들이 현금을 휴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난을 방지하고, 술을 사는 원인을 줄이기 위해서 현금 보유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

다) 포상 및 징계

포상과 징계는 당근과 채찍이다. 포상을 통해 잘된 일을 더욱 장려하고, 징계를 통해 군부대로써의 기강을 확립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서희부대와 단비부대 포상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3] 단비부대와 서희부대의 포상현황

구 분	단비부대 (UN PKO)	서희부대 (다국적군 PKO)
훈 격 및 수 량	• 포장(2), 대통령 표창(3), 국무총리(4) • 합참의장표창, 참모총장표창	• 훈장(1), 포장(4), 대통령 표창(10), 국무총리(4) • 합참의장표창, 참모총장표창

단비부대는 240명, 서희부대는 650여명의 부대원이었다. 병력의 차이는 있으나 전투 지역 파병과 비전투지역 파병이라는 차이로 포상의 훈격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비전투지역이나 전투지역의 구분도 중요한 고려요소이지만 해외파병 1진 부대의 노고는 2진, 3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숙영지 조성도 되지 않아 맨땅에 천막을 설치하고 부대를 일궈나가며 UN 및 타국가와 업무체계를 정립해 나가는 노고를 고려 1진 부대에는 훈장을 수여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포상지침에 따른 훈격이지만 국방부나 합참의 파병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포상은 심의위원 선발, 심의, 지휘관 결심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포상은 간부들의 보이지 않는 경쟁의식이 생겨서 부대 단결을 저해하는 현상도 발생한다. 징계는 부대를 위해 필요악이다. 6개월간의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다. 6개월 후 각자 부대로 복귀하기에 기강 확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군기강 확립과 사고예방 차원에서 징계는 과감히 조치해야 한다. 서희부대와 단비부대 공허 음주사고, 구타, 상관모욕 등의 발생했으나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 징계까지는 처리하지 않았다. 사고예방을 위해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

라) 사기 및 복지

파병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사기와 복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대별 단결행사는 파병 1개월, 2개월, 100일, 복귀 1개월 전 등의 시기에 실시한다. 단순한 회식행사보다는 파병 인근지의 유적지나 유원지를 방문하는 것도 좋다. 서희부대 장병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생가 터와 바벨탑 등을 관람했다. 단비부대는 부대 인근의 해안가에서 해수욕으로 스트레스 해소와 부대 단결을 도모했다.

<그림 4-11> 서희부대와 단비부대의 단결 행사³²⁾



서희부대, 아브라함 생가터 관람

단비부대, 부대인근 해수욕

장병의 두발정리를 위해 부사관단에서는 이발병을 육성하여 이발소를 운영했다. 부대내에서 주로 생활하는 장병들(취사병, 정비병, 경계병)은 월 1회 외출 기회를 제공하여 기념품 구매의 기회도 주고 단순한 파병 생활에 변화를 주기도 해야 한다. 타국과의 친선행사도 좋다. 한국 및 부대 소개이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유용하다. 서희부대는 미국, 영국, 이태리, 루마니아군을 초청하여 운동을 하였고, 단비부대는 일본, 칠레, 에콰도르, 스리랑카 등을 초대해 식사를 하곤 했다.

<그림 4-12> 외국군과의 단결 행사³³⁾



서희부대, 미군공병 초대 운동

단비부대, 스리랑카군 초대 식사

32) 이우식 등 다수, 전계서, p244

33) 상계서, p188

마) 인사근무

인사근무 사항 중 휴가와 행사 등이 있다. 휴가는 청원휴가, 파병연장자 휴가, 파병 복귀 후 위로 휴가의 3가지가 대표적이다.

첫째, 청원휴가는 병사의 부모께서 사망하여 이라크에서 한국으로, 아이티에서 한국으로 휴가를 보낸 경우이다. 서희부대 병사 2명, 단비부대 1명을 각각 15일 청원휴가를 보냈다. 항공료는 부대에서 지급하였으며, 간부들이 조금씩 조의금을 보태기도 했다. 병사의 파병 중 휴가는 단수여권이 문제이다. 1회 밖에 사용하지 못하므로 한국으로 휴가를 갔을 경우, 부대로 복귀할 때 여권을 다시 발급 받아야 한다.

둘째, 파병 연장자 휴가이다. 6개월 파병에서 추가로 6개월을 더 파병하게 되는 경우이다. 약 10일간의 휴가를 허락한다. 항공료는 개인 부담이다. 한국 귀국 시 복귀장병의 항공기를 이용하면 개인경비가 들지 않지만 파병부대로의 복귀 시에는 개인 부담의 항공료를 지불해야 한다. 부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의 개선을 건의한다. 2백만원 이상의 항공료를 개인 부담하는 것은 청원휴가와 형평에 맞지 않다.

셋째, 위로휴가이다. 파병 복귀 후 25일간의 휴가를 보내게 된다. 이때 장병이 자대 복귀전까지는 파병 부대 소속이다. 이는 개선할 여지가 있다. 한국 복귀하고 파병부대 해체식 후 장병의 자대에서 병력을 통제하면 사고 예방도 되고 병력관리도 된다. 따라서 파병 복귀 후 자대 소속으로 소속부대를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UN PKO의 경우 90일 이상 UN 임무수행 시 UN메달과 인증서를 수여하는 ‘메달 퍼레이드 행사’가 있다. 임무단의 특별대사, 군사령관, 지역 주요인사, 타 파병국 장병 등이 참석하여 파병부대의 부대 안전과 안정화를 축하하며, 부대는 자국의 음식과 문화를 소개한다. 서희부대는 다국적군 PKO로써 메달 퍼레이드 행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단비부대의 메달 퍼레이드 행사에서는 250여명의 주요인사, 타 파병국 장병이 참석했다. 한국이 세계적 경제대국(12위)임을 타국군도 알고 있어 한국의 음식과 문화, 장비, 부대를 체험하기 위해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다. UN PKO 파병시에는 한국음식, 문화, 부대소개를 위해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단비부대에서는 태권도 시범(격파, 품세)을 보여 주었다. 한국 음식 중에는 김치와 족발이 가장 인기가 있었다.

<그림 4-13> 단비부대 메달퍼레이드³⁴⁾

	
UN 메달	메달 퍼레이드 인증서
	
UN 메달 수여(특별대사/부대장)	외국군, 한국음식 오찬(불고기,김밥 등)

2) 인사분야 개선사항

파병 활동간 인사분야에서 개선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지인에게 욕설을 가르치지 않도록 장병에게 교육을 한다. 이는 파병 전부터 지휘관 및 헌병 등 관련 참모에 의해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비속어 및 욕설로 인격 침해하고, 현지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해외 파병 1진 부대의 경우 훈장 등 포상 훈격이 더 높아져야 한다. 전투지역 또는 비전투지역의 파병이나보다는 1진 파병 부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훈격을 높이도록 관련부서에서는 노력해야 한다. 셋째, 사기 진작을 위해 파병 인근지의 역사 유적지, 유원지를 잘 이용한다. 넷째, 파병연장자의 휴가비에 대한 부대지원과 파병 복귀 후 장병의 소속을 원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사고예방과 부대에서의 병력 관리면에서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34) 이우식 등 다수, 전게서, p117

나. 정보분야 주요활동

① 정보수집 ② 군사보안 ③ 지형정보지원 ④ 기상정보 지원

1) 세부 사항별 내용

가) 정보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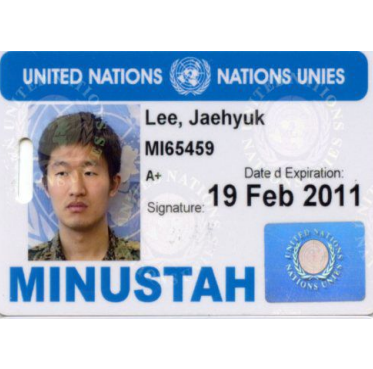
해외 파병 부대는 UN군 및 다국적군의 정보부서, 개인파병 인원, 현지 통역인, 인터넷, 현지 방송매체 등을 이용하여 현지정세와 파병부대에 대한 적대 세력의 존재 여부에 대한 첩보를 획득한다. 현지인에 의한 첩보수집이 가장 용이하고 정확하다. 현지 통역인 또는 현지의 주요인사에게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제공하면 좋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개인 파병된 인원에게 의한 상급부대의 지휘관과 참모활동, 현지정세 등을 쉽게 획득할 수 있다. 서희부대의 경우 다국적군 참모부에 소령 정영식 등 3명이, 단비부대의 경우 소령 이선희 등 2명이 참모요원으로 개인 파병되어 부대의 전개 및 정보수집에 큰 역할을 했다. 개인 파병을 확대할수록 신속파병도 용이하고 부대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 UN본부, 세계 각지의 UN 임무단 및 다국적군의 참모요원으로 개인 파병을 확대토록 노력해야 한다.

나) 군사 보안

파병 부대의 보안을 위해 현지 통역인에게는 부대 출입증을 발급하였다. 단비부대는 자체 제작하여 활용하였고 UN PKO 장병들은 공통적으로 ID카드를 제작하였다. 이 카드는 UN PKO의 모든 부대에 출입이 가능하며 PX이용 시 ID카드가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쳤을 경우 군 병원 이용시 ID카드가 신분증의 기능을 하며 카드 소지자에 한해 진료가 가능했다. 서희부대는 다국적군의 공통 출입증을 제작하여 부대 출입 시 활용하였다.

해외파병 1진 부대는 주둔지가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하여 건설공사가 많다. 숙영지 건설공사를 위해 한국 기술자가 부대를 출입 하였다. 1개월 이상의 장기출입자는 신원조사와 후속조치를 했다. 단비부대의 경우 한국인 기술자 5명 중 1명이 2년전 체불임금에 대한 요금 지급을 요구하며 폭행을 행사하여 벌금형을 받은 인원이 있었다. 신원조사에서 이 사실이 발견되어 보안 심의 후 건설공사 목적 부대 출입을 허락하였다. 부대 내의 한글 서류를 읽을 수 있는 현지인은 아무도 없으나 행정서류 및 파지 등 일체의 종이 서류가 부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였다.

<그림 4-14> 서희부대 및 단비부대의 출입증

 ROK ARMY 068 Name/Back: CHUN, SEUNG DUCK UNITED STATES Tallil AB, Iraq PERSONNEL BADGE	 출 입 증 아이티 원단 아 건지원단 재건지원 티재건지 이티재건 아이티재 단아이티 Bijou Carline (비조우 칼린) 아이티 - 5 현지통역인	 UNITED NATIONS NATIONS UNIES Lee, Jaehyuk MI65459 A+ Date of Expiration: 19 Feb 2011 Signature: MINUSTAH
서희부대, 출입증	단비부대, 통역인출입증	단비부대 ID 카드

1진 부대의 경우 세절기가 본대 파병 후 약 3개월이 지난 후 도착했다. 부대에서는 웅덩이를 파서 행정서류 파지를 소각하였고, 3개월 후에는 세절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전산장비의 보안을 위해 주1회 정보장교가 전부대의 장병을 대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였다. 유무선 인터넷 연결로 부대활동 사진 및 한국군 현황의 유출이 가능했으므로 정기적 보안점검은 필수적인 활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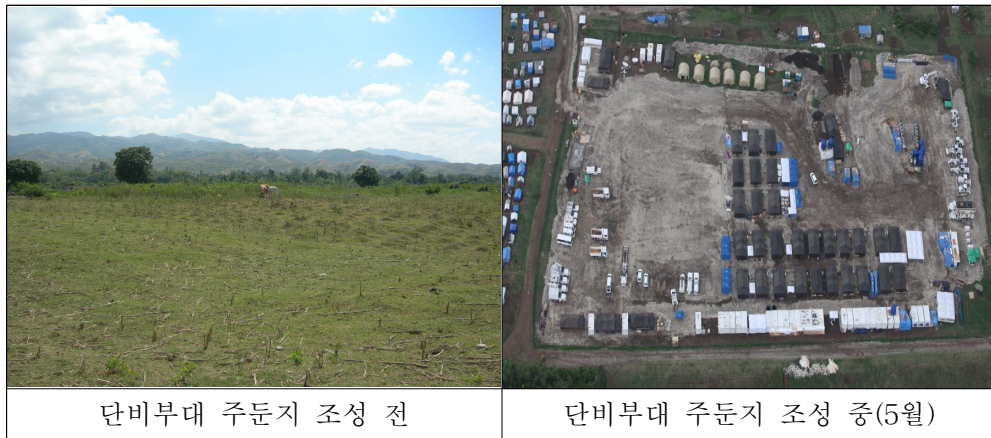
다) 지형정보 지원

해외파병 1진 부대는 파병지역의 지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서희부대 파병 시에는 이라크 파병지역 안나시리아의 지도도 구하지 못한 상태였고, 선발대가 이라크 도착 후 미군 정보부서에서 획득하기도 했다. 단비부대는 아르헨티나 항공부대와 협조하고 UN 임무단 관련 참모의 승인을 받아 월 1회 항공정찰을 실시하였다. 주둔지 조성의 변화모습과 공사현장 모습, 난민촌의 변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런 자료들은 부대 운영에 유용했고 합참 및 육본으로의 지휘보고 시에 이용할 수 있었다.

라) 기상정보 지원

해외파병 1진의 파병지의 기상을 정확히 측정하여 2진에게 전달하여 부대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라크 서희부대는 18~20 %의 무서운 모래폭풍 속에서는 마스크, 보호안경 착용과 긴팔 옷을 꼭 입어야만 천막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모래가 콧속으로 들어와 숨을 쉴 수 없고, 미세먼지가 눈에 들어온다.

<그림 4-15> 단비부대 주둔지 변화모습³⁵⁾



모래 폭풍 속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 위력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아이티는 허리케인이 유명하다. 지진으로 주택이 파괴된 난민들은 무너진 집에서 살 수가 없었다. 대지진 이후 여진이 5개월간 20여 차례 계속되어 부대 인근 레오간 시민들은 천막에서 생활을 했다. 천막촌은 저지대에 위치하여 허리케인이 오게 되면 강풍과 홍수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티인들은 허리케인을 무서워한다. 단비부대는 잦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주둔지의 영구시설을 조기 완료토록 추진하기도 했다. 이라크는 최고기온이 59℃, 아이티에서는 최고 기온이 49℃였다. 짐통이 따로 없었다. 따라서 부대에서는 열사병 예방을 위해 중식 시간을 2시간(12:00~14:00)을 보장하여 오침 및 휴식 여건을 부여했다.

다. 작전분야 주요활동

① 지휘체계 확인 ② 부대방호 ③ 민사작전

1) 세부 사항별 내용

가) 지휘관계 확인

파병부대에 있어 지휘체계는 임무 수행을 위한 상하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외국에 파병되지만 한국에서도 지휘의 끈을 유지하고 있다. 서희부대와 단비부대 뿐만 아니라 해외파병 모든 부대는 육본에 예속되며 합참에 배속된다. 파병 이후에는 합

35) 이우식 등 다수, 전게서, p132

참의 지휘를 받는다. 파병지에서는 UN군 군사령관 및 다국적군 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게 된다. 세부적인 계통은 표와 같다.

[표 4-14] 단비부대와 서희부대의 지휘체계

단비부대 (UN PKO)	CJTF7(연합군특임부대)-지역군수지원단-미공병단-서희부대 작전통제
서희부대 (다국적군 PKO)	MINUSTAH(아이티안정화임무단) 군사령관-단비부대 작전통제

과거 한국군의 파병부대 지휘체계는 전투원 파병시(베트남전)에는 미군의 작전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 작전권을 행사했다. 독자적 작전권 행사로 인해 한국군의 전투지원분야는 한국군이 대부분 해결해야 하는 단점도 있었다. 비전투원 파병 시에는 UN군 또는 다국적군의 작전통제 하에 임무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투근무지원분야의 협조가 용이하고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많다. 해외파병 부대는 지휘체계를 사전에 확인하고, 한국에 이익(장병 희생 최소화, 파병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휘체계가 정해지도록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나) 부대 방호

해외파병 1진 부대는 주둔지 조성 시 부대 경계를 위한 울타리 설치 및 부대방호가 중요하다. 서희부대는 다국적군으로 동맹군이 이라크 공군기지였던 탈릴 기지를 공동 사용함으로써 자체 경계 소요는 거의 없었다. 미군이 기지 외곽을 3중으로 방호하며 24시간 경계를 제공 하였다. 미군은 전투지역의 파병 경험이 많아 부대 방호를 위한 경계시스템이 잘 이루어져 있다. 안일하게 생각하던 한국군은 인식의 차이로 미군과의 소소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미군의 기지출입 절차는 복잡했지만 부대원의 안전도는 그 만큼 높았다. 한편 단비부대는 타국 군과 동떨어진 레오칸 지역에 단독으로 주둔하여 경계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다. 항공 수송 물량 초과로 부대 방호용 철조망을 계획물량의 1/3밖에 수송하지 못했다. 울타리 설치는 유행 철조망으로 임시 설치하였다. 이로 인해 부대의 공사용 자재의 분실사고도 일어나곤 했다. 파병 1진 부대는 최초 유행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설치하였다가 공사자재가 확보되면서 영구적 울타리를 설치했다. 부대의 위병소도 제대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유행철조망으로 설치하여 인원 및 장비의 출입을 통제했다. 주둔지 조성간 부대 방호 자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확보토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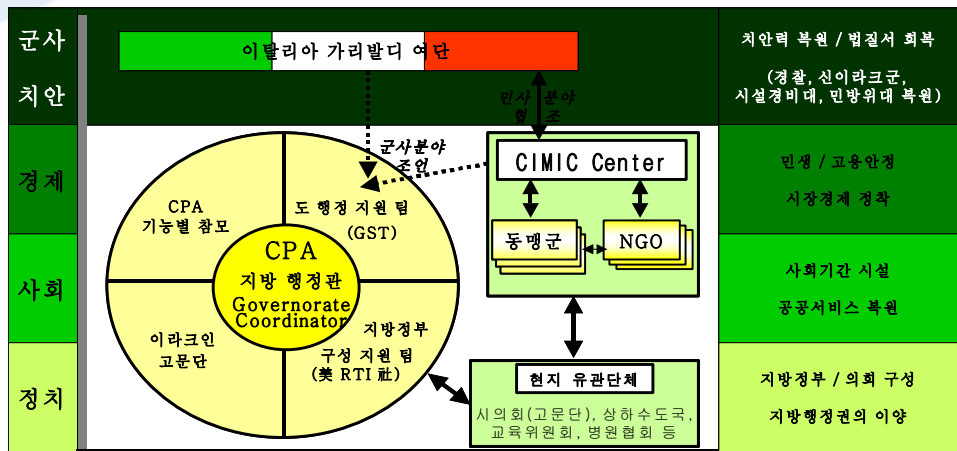
<그림 4-16> 단비부대 울타리³⁶⁾



다) 민사작전

파병부대의 민사작전은 파병임무 수행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지 주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재건지원 임무이거나 전후복구 임무를 수행할 때 현지민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다. 서희부대의 민사작전은 CPA(Coalition Provision Authority, 동맹국 임시통치기구)의 주도 하에 실시했다. 민사작전의 군 조직의 민사작전 센터와 이탈리아군이 있고 민간단체들이 있었다. 이들 기관의 상호관계는 표와 같다.

[표 4-15] 서희부대의 민사작전 기관 상호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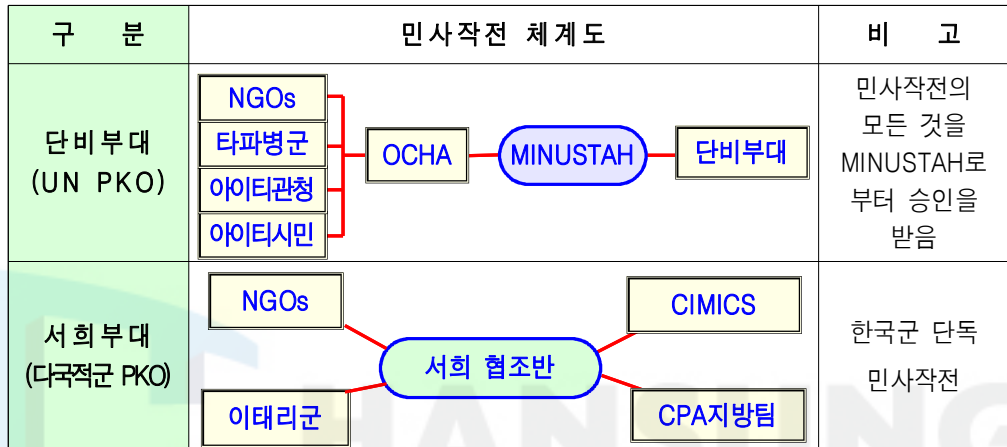


위의 표에서 보듯 CPA 지방행정관은 정치, 사회, 경제 부분을 관할하며 군사치안은

36) 이우식 등 다수, 전게서, p173

이탈리아군이 담당하고, 다국적군의 민사작전센터(CIMICS)와 CPA는 상호 지원한다. 서희부대의 협조반이 이들 기관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지원요소를 결정하고 민사작전을 단독으로 수행했다. 단비부대는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MINUSTAH)의 통제 및 승인을 받아 민사작전을 수행 하였다. 서희부대와 단비부대의 민사작전을 비교하면 표와 같다.

[표 4-16] 서희부대와 단비부대의 민사작전 비교



아이티에서의 민사작전은 현지주민과 NGO들이 지원요구 사항을 UN임무단의 참모부와 사전협조하고 군사령관의 허가를 받아 단비부대로 지원지시가 내려진다. UN임무단의 지시를 받아 고아원, 학교 등을 수리해주고 어린이에게 학용품과 채육기자재, 과자 등을 나누어 주었다.

<그림 4-17> 단비부대 민사작전³⁷⁾



37) 이우식 등 다수, 전게서 p153

일정	3. 4	3. 5	3. 12	3. 29	4. 13	4. 14	5. 1	6. 9
대상	난민촌	난민촌	난민촌	난민촌	난민촌	난민촌	난민촌	계령초등학교
내용	초코파이 14박스	초코파이 40박스	초코파이 50박스	쌀 69 포대	생필품 100세트	생필품 70 세트	단양식기 70세트	학용품, 체육기자재

2) 작전분야 개선사항

작전분야 주요 활동 중에서 파병 1진의 동일한 실수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개선 사항을 제시한다. 첫째, 파병 부대의 지휘체계이다. UN PKO 또는 다국적군 PKO에 관계없이 전투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파병이라면 단독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다만 비전투 파병이라면 UN, 다국적군의 작전통제를 받는 것이 파병 목적 달성에 이롭다. 또한 UN PKO와 다국적군 PKO의 지휘관계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휘관계의 확인이 업무수행의 질차이며 업무협조선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부대방호 중 울타리 보강은 지속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자재가 부족하더라도 가용 수단을 이용하여 울타리를 보강해야 한다. 부대원의 장비류를 분실할 수도 있다. 항공 수송물량이 초과해서 수송이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물자 수송순위를 높이고 가용자재를 이용하여 부대 울타리를 보강한다. 셋째, 민사작전 물품을 한국에서 구매 수송한다. 현지에서의 구매는 제한된다. 가방, 노트, 연필, 볼펜 등의 학용품은 한국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인데 현지의 물품은 물량도 부족하고, 질도 낮다. 한국 제품에 태극기를 인쇄하여 넣으면 홍보에도 좋다

라. 군수분야 주요활동

① 급 식 ② 총기/탄약관리 ③ 장비관리 ④ 추가보급 수송

1) 세부 사항별 내용

가) 급 식

해외 파병 1진 부대는 파병준비 기간의 촉박함으로 약 2개월 정도의 전투식량을 준비해서 파병해야 한다. 이는 자체적인 취사능력 구비도 힘들고, 식자재를 구매하거나 UN으로부터 보급을 받는 데도 약 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식량뿐 아니라 식수도 2개월 이상의 분량을 준비해야 한다. 1진 부대는 파병초기 약 2개월까지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표 4-17] 단비부대와 서희부대의 급식현황

구 분	단비부대(UN PKO)	서희부대(다국적군 PKO)
식 수	• PET병 식수(1일 1인 3병기준) → 한국산 수송	• PET병 식수(1일 1인 3병기준) → 쿠웨이트에서 구매
급 식	• 전투식량(발열식) 1개월 • UN부식/조리 5개월	• 전투식량(비발열식) 1개월 • 미군식 2개월 • 한국식 3개월

식수는 단비부대의 경우 한국산을 수송해서 마셨으며 파병 4개월 후에는 UN임무단 PX에서 외국물을 구매하여 마셨다. 서희부대는 쿠웨이트에서 PET병 식수를 구매하여 마셨다. 장병들은 한국물 PET병 식수를 선호했다. 500ml PET 1병의 가격이 약 500원이고 수송료가 약 500원 상당이었다. 수송료가 많이 들지만 한국물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현지 생산 식수는 한국군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 급식은 전투식량과 한국식, UN부식을 이용하는 조리 등이 있다. UN보급 부식은 한국 장병의 입맛에 맞지 않았다. 한국에서 가지고 간 김, 김치, 고추장의 인기가 높았다. 높은 기온으로 입맛이 없으니 취식량을 늘렸다. 장병들은 평균 5kg 이상 체중이 감소했다. 추가 물자 수송 시 가능하면 많은 한국식자재를 수송하는 것이 좋다.

나) 총기/탄약 관리

파병의 유형별로 UN PKO, 다국적군 PKO이냐에 따라 총기의 휴대 기준이 다르다. 서희부대는 식사, 샤워,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 휴대가 규정이었다. 취침 시에도 침대에서 개인 휴대하였다. 단비부대는 경비대의 경계작전 시를 제외하고는 총기를 휴대하지 않았다. 적의 위협 유무에 따라 총기 휴대가 결정되며 전투지역에서는 항상 휴대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 서희부대의 경우 부대 밖 활동시 탄약을 휴대 했는데 부대 복귀 시 필히 안전검사를 실시했다. 외부 활동 후 규정대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다가 오발이 된 경우가 있었다. 다행히 규정을 준수하여 사고가 없었다. 어떠한 경우에도 총기 안전검사는 규정대로 실시해야 한다.

다) 장비 관리

해외 파병 1진 부대의 특징인 신속파병으로 인해 장비 준비가 미흡하여 파병 이후 장비관리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서희부대는 쿠웨이트에서 건설 및 수송장비를 구매하고 수리부속도 구매하였다. 장비를 지정된 일정에 맞게 납품 받지 못했던

것은 중동지역 현지인 특유의 나태함이 작용한 것이다. 파병 1진이 중동지역으로 파병된다면 현지인의 특성도 알아야 한다.



<그림 4-18> 단비부대 차량점검³⁸⁾

단비부대는 한국의 공병부대에서 사용 중이던 장비를 차출하여 수송하였다. 상이한 생산회사, 생산국으로 수리부속 구매가 제한되고, 일부 중국산 장비는 장비 정비 및 관리가 어려웠다. 중국산 장비는 페이로다 2대, 구레이다 1대, 진동로라 1대 등으로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 중 굴삭기를 제외한 필수장비가

중국산이다. 중국산 장비 자체의 성능에는 문제가 없으나 부품 조달이 문제이다. 이는 아이티나 도미니카 등에서 수리부속 조달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장비운용에 영향을 미쳐 공사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

구 분		수 량(대)	연 식	생 산회 사	비 고
계		16	—	—	—
굴삭기	케도	3	2003	두산	08(2),04(1)
			2006	현대	
			2007	현대	
	타이어	5	2003	두산	
			2009	두산	
			2009	두산	
			1997	삼성	
			1999	현대	
페이로다		2	2008	대진인더스트	중국산
구레이다		2	1990	삼성중공업	
			2007	대진인더스트	중국산
진동로라		1	2007	대진인더스트	중국산
도차		2	2000	볼보	
			1994	삼성(삼방중기)	
지게차		1	2009	클라크	

<표 4-18> 단비부대장비현황³⁹⁾

먼지 많고 비가 자주오며 40℃ 이상의 고온에서는 장비의 고장도 잦았다. 또한 단비부대처럼 지진에 의한 피해지역은 잔해에서 못, 철근 등이 나왔는데 이로 인해 굴삭기,

15DT 등의 장비 바퀴 펑크가 자주 났다. 현장의 불비한 여건 등으로 인하여 주요 장비인 굴삭기 및 페이로다 타이어가 자주 파손되어 교체주기가 급격하게 단축되었

38) 이우식 등 다수, 전계서, p153

39) 상계서, p188

다. 파병 5개월 만에 굴삭기 타이어 3개, 페이로다 타이어 2개를 교체하였으며 공병 장비의 타이어도 3개월 동안 43회나 펑크가 나 장비운용에 제한이 많았다. 타이어는 도미니카 현지에서 구매하였는데 타이어의 질이 국내용과는 달리 현저하게 떨어졌다. 해외 파병 1진의 신속파병을 파병관련 별도지정부대인 공병부대에는 건설 및 기동 장비 등을 현대화시키고 수리부속도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야 한다.

라) 추가 보급물자 수송

파병부대에 대한 추가 보급물자는 3개월 단위로 실시된다. 이는 전투식량 및 식량(쌀, 부식류 등)의 물량을 3개월 단위로 수송하기 때문이다. 추가물자 수송시 식자 채뿐만 아니라 추가 장비 및 수리부속 등도 수송하였다. 민간 항공기와 선박 수송, 미군 하역장비 이용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송을 한다.

[표 4-19] 단비부대와 서희부대의 물자 수송/하역

단비부대 (UN PKO)	서희부대 (다국적군 PKO)
• 민간 항공기 및 선박 수송 -1차보급:미군하역장비 이용 - 아이티용역업체 수송 -2차보급: - 아이티용역업체 하역 및 수송	• 민간 항공기 수송 • 미군 하역장비/수송장비 이용

2003년 서희부대에서는 미군의 하역장비와 트레일러 등 수송장비에 100% 지원을 받았다. 7년이 지난 2010년 단비부대에서는 하역 및 수송을 위한 용역업체(한국회사 계약, 현지회사 시행)가 있었음에도 현지인의 하역 및 수송 경험이 부족하여 물자 파손이 계속 되었다. 사진에서 보듯 간이화장실 2개가 파손되어 사용하지 못했으며, 목재, 합판 등이 파손 되어 피해를 주었다. 항만 인근의 미군 장비를 지원 받았다. 미군 장비를 지원 받으면 미군에게 경비보전을 해 주어야 한다. 단비부대 2차 보급 시에도 아이티 현지 업체와 계약했으나 하역 및 수송은 1주일 이상 지연되고 물자의 파손도 동일하게 발생하였다. 수송 및 하역을 위한 한국군 자체의 장비와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파병을 출발했으나 현지에서의 장비 하역 및 수송이 늦어지면 신속파병은 그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파병 1진 부대의 파병 시에는 대형 트레일러 및 크레인과 지게차 등을 갖추어 파병을 해야 한다.

<그림 4-19> 단비부대 장비 하역



2) 군수분야 개선사항

해외파병 1진 부대의 신속한 파병(정확히는 성급한 파병)의 피해는 파병 기간 중 군수분야의 물자에서 눈에 띄게 나타난다.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몇가지 제시해 본다. 첫째 한국식 취식 증가 방안이다. 해외로 파병을 나갔으면 입에 맞지 않는 음식도 먹으면서 고생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열사의 땅에 나가 비오듯 흐르는 땀을 경험해보면 밥맛은 없고 기운도 없게 된다. 잘 먹어야 체력도 길러지고, 건강을 유지하여 임무수행도 원활히 할 수 있다. UN에서도 식자재를 보급하지만 한국 장병의 취식도는 낮다. 추가보급의 횟수가 늘어나더라도 한국의 물과 한국 식자재의 보급을 늘려 장병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추가 보급이 불가하다면 파병지 혹은 파병 인접국의 한국 교민을 통한 한국 식자재를 구입하여 취식토록 하는 것이다. 이라크 서희부대는 식자재를 쿠웨이트 거주 한국 교민을 통해 식자재를 구매하였다. 둘째 총기 및 탄약 관리이다. 파병 유형에 맞는 총기 휴대 규정을 준수하고 탄약 안전검사도 규정대로 한다면 사고는 예방 될 수 있다. 셋째 신속파병을 위한 건설 및 기동장비, 수리부속의 SET화이다. 공병부대의 장비를 현대화하여 유사시 신속한 해외파병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넷째는 신속파병을 위한 화물하역 및 수송장비를 갖추는 것이다. 해외 미국이 없는 파병지에서 자체적인 하역과 수송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대형 크레인과 트레일러, 대형 지게차를 파병 장비로 편성해야 한다. 이런 장비들이 1회성의 사용횟수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형장비를 보유하게 되면 파병지에서도 타 파병국가를 지원해줄 수 있다. UN과 다국적군의 지휘부로부터도 신임을 얻을 수 있

다. 아이티에서 브라질은 대형 장비를 편성하여 타 파병국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도 했다.

마. 공사분야 주요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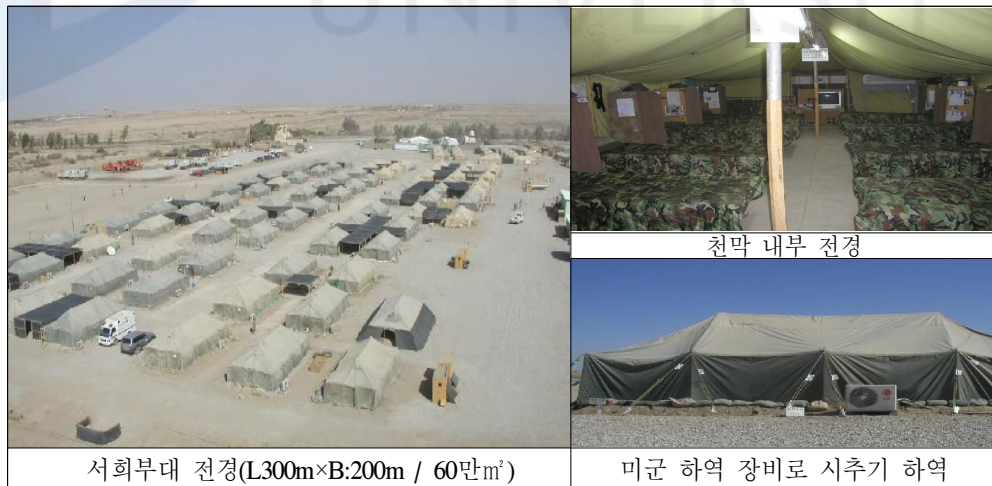
① 주둔지 조성 ② 편의 시설 설치 ③ 복구/재건지원활동

1) 세부 사항별 내용

가) 주둔지 조성

파병 1진 부대는 1개월 이내의 파병준비로 주둔지 조성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파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희부대는 미군과 협조하여 주둔지 천막 100동을 지원 받았다. 본대가 쿠웨이트에서 이라크로 이동전까지 1주일 동안 50명의 선발대가 100동의 천막을 설치했다. 4월 한낮의 온도가 45℃~50℃를 보여 천막 설치하는 쉽지 않았고 짧은 기간 동안 100동을 설치해야 되었기에 밤늦게까지 작업을 했다. 1.5ℓ PET병 3개가 1인당 기준으로 식수, 세탁, 세수용이었다. 세탁, 세수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주둔지는 위협 등 급수, 생활용수, 오·하수 처리문제, 장비 주차 공간 등을 고려하여 탈릴 기지의 위병소 인근에 위치하였다.

<그림 4-20> 서희부대 주둔지 조성⁴⁰⁾



천막 내 생활은 약 2개월 후 에어컨과 바닥판이 설치되어 먼지와 고온으로부터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었다. 당시 육본에서는 전장터에서 에어컨 설치는 말이 안 된

40) 이우식 등 다수, 전계서 ,p199

다고 강경한 반응을 보였으나 현지의 50℃ 이상의 고온을 체험하지 않고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

단비부대는 주둔지 조성이 크게 3단계로 진행 되었다. ① 기본적 천막 및 편의시설 설치, ② 천막 내 단열처리(목재 프레임/스티로폴 설치), ③ 컨테이너 영구시설 설치로 진행 되었다. 설치 내용은 표와 같다.

[표 4-20] 단비부대 주둔지 시설 설치현황⁴¹⁾

구 분	계	24인용 천막			컨테이너
		생활관	편의시설	사무실	창고
수량(동)	83	17	14	10	42

아이티의 고온과 잦은 집중강우를 고려하여 군용 천막은 목재 프레임 설치시 바닥판을 30cm 상승시켰고, 단열재를 설치하였다. 바닥판을 상승시켜 집중호우 시 천막은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 목재 프레임 설치용 합판과 목재는 그 부피와 무게가 몇 백 톤은 되었다. 이로 인해 물동량이 증가하고 수송비용도 증가하며, 다른 중요한 물자를 수송치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신속한 파병 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4인용 천막이지만 이는 사막지역이나 아이티 같은 열대지역에서는 생활관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하지 않다. 비가 오면 누수가 심하여 비닐을 덮어야 했으며 복사열로 천막내부는 사우나실을 방불케 했다.

<그림 4-21> 단비부대 주둔지 조성⁴²⁾



나) 편의시설 설치

41) 이우식 등 다수, 전게서, p217

42) 상계서, p219

사람이 어디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화장실, 샤워장, 세탁시설, 식당 등의 기본적인 편의시설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편의시설에 대한 파병 1진 부대의 실태를 너무나도 열악하고 형편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희부대와 단비부대의 편의시설 설치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21] 단비부대와 서희부대의 편의시설 현황

구 분	단비부대 (UN PKO)	서희부대 (다국적군 PKO)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간이화장실 (분뇨위생처리)	재래식화장실(분뇨소각)
샤워장	간이샤워장(천막/컨테이너이용)	간이샤워장(목재 프레임/차양막)
세탁실	간이세탁실(컨테이너이용)	간이세탁실(목재 프레임/차양막)
식 당	24인용 천막(단열처리)	24인용 천막

파병 1진 부대의 편의시설은 임시시설이나 간이시설로 설치했다.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간이시설로 설치되다 보니 2개월 이상 이용 시 시설물 보수가 과다 발생했고, 간이 시설물의 수송도 용이하지 않았다. 단비부대의 경우 간이 화장실 20개중 4개가 하역중 현지 노동자의 부실로 파손 되었다. 파병 1진 부대의 편의시설도 표준화 조립식 컨테이너로 개발 보급해야 한다. 또한 생활하수를 정화하기 위해 연못을 만들어 수생식물을 심었다. 환경보호와 정서함양에 도움이 된 시설이었다. 아래의 사진은 단비부대의 파병 초기 편의시설과 부대안정화 이후 편의시설의 변화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22> 단비부대 편의시설 설치⁴³⁾



43) 이우식 등 다수, 전계서 p231



연못설치(환경보호, 정서 함양)



간이 화장실(초기)



이동식 화장실



세탁실 및 샤워장(초기)



샤워장(컨테이너)



세탁실 및 샤워장(초기)



세탁실(컨테이너)

편의시설도 표준화된 조립식 컨테이너로 개발되어 해외파병 1진부대의 신속파병이 용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복구/재건지원 활동

파병 1진 부대는 주둔지 조성과 복구/재건지원의 2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현지 경찰을 통한 작업 인원/장비/기간/자재, 경제지원, 기타 협조사항들을 확인한다. UN 임무단 및 다국적군의 관련 참모 보고 후 군사령관의 승인(예산포함)을 받아 복구/재건지원 임무를 수행했다. 서희부대는 이라크 전쟁이후 전후 복구가 주 임무였다.

[표 4-22] 서희부대의 전후복구 현황

계	학교보수	병원보수	급수시설 설치	오하수시설 보수	교량보수
28(건)	13	4	3	6	2

전후 복구 지원이었으나 전쟁에 의한 시설물의 피해가 아니라 사담 후세인의 독재로 인한 경제침체로 시설물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맹군에 대한 인원과 장비지원 현황은 미군에 대해 인원 1,600여명, 건설장비 365대 지원, 이탈리아군에 대해 인원 225명, 주요 건설장비 32대를 지원했다. 한국군은 고온에도 성실히 일하는 것에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타국의 지휘관들로부터 감사와 칭찬을 받았다. 단비부대는 지진 피해에 대한 복구/재건지원 임무를 수행했다. 임무수행 현황은 표와 같다. [표 4-23] 단비부대의 복구/지원 현황

계	피해건물 철거	도로 복구	부지 정리	하천 준설
21(건)	8	4	7	2

임무수행은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의 승인 및 지시로 이행했다. 피해를 당한 아이티 국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사항이 되었다. 아이티의 작은 도시 레오간 시민들은 단비부대의 건설장비인 굴삭기, 15DT, 크레인, 도자, 트레일러 등을 무척 신기해 했다. 신속한 파병으로 인한 주둔지 조성과 물자 보급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진의 피해를 복구한다는 자부심에 단비부대원은 재건활동을 성실히 수행했다. UN 임무단에서는 단비부대의 임무수행 상태가 훌륭하여 많은 임무를 부여하기도 했다. 군의 건설장비로 긴급복구 작업은 가능했으나, 영구시설 설치 등의 예산이 소요되는 작업은 할 수 없었다. 파병부대와 더불어 한국 정부 및 기업과 연계된 복구/재건지원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림 4-23> 단비부대 피해복구 모습⁴⁴⁾



2) 공사분야 개선사항

해외파병 1진 부대의 공사분야는 주둔지 조성과 재건/복구지원 활동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보다 더 효율적인 1진 부대의 운영을 위해 몇 가지 개선사항을 제시해 본다. 첫째, 표준화 조립식 컨테이너의 개발과 보급이다. 파병 1진 부대는 대부분 영구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한국군용 24인용 천막을 이용한다. 영구시설이 설치되기 전까지 2~3개월가량 임시시설로는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천막도 복사열이 심하고, 비가 새어 비닐을 덮는 등 단기간의 활용 밖에 되지 못한다.

44) 이우식 등 다수, 전계서 p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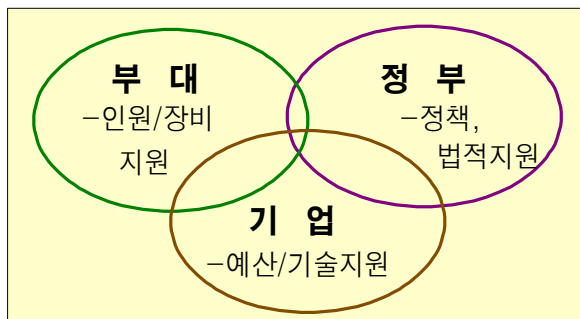
공사분야 개선사항 두 번째는 임시 천막을 이용한 주둔지 설치 시 현지 기상을 고려해야 한다. 파병지의 기후는 고온다습, 집중호우가 많다. 이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해 24인용 천막은 지상에서 30cm 상승시켜 목재프레임을 설치하고, 단열재를 설치한다. 에어컨은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4인용 천막 위에는 비닐을 덮어서 누수를 예방하고 인삼천의 차양막으로 햇빛 가림막을 설치한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연병장이 진흙탕으로 진흙 범벅이 되기 일쑤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천에서 흙과 모래, 자갈이 섞인 골재를 채취하여 연병장에 포설하였다. 몇 번의 집중호우 후에는 흙과 모래가 씻겨 내려가고 자갈만이 남아 더 이상의 질퍽거림은 없었다. 해외파병 1진 부대에서는 골재 포설, 목재프레임, 단열재 설치, 에어컨 설치 등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그림 4-24> 단비부대 천막 단열재 처리45)



셋째는 파병부대의 복구 및 재건지원 활동을 정부와 기업이 합동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한다. 파병지에서의 활동이 군부대의 평화유지활동이 아닌 범정부적으로

[표 4-24] 민군관의 시너지



효과

이루어져 국가이익에 보탬이 되어야 할 것이다. 파병부대에서는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정부에서는 피파병국의 각 기관과 협

45) 전계서 p219

조하여 정책 및 법률적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기업은 재정지원과 기술을 지원하여 장기간의 복구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파병시 정부기관의 담당자와 기업의 담당자도 함께 파병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본다.



아이티 204도로(아이티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

제 5 절 파병 성과

해외 파병은 유엔의 PKO 파병과 다국적군의 PKO 파병에 문제가 되지 않고 어느 파병이든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함을 앞에서 알아보았다. 그 파병성과의 성과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서희부대 파병 성과

우여곡절 끝에 파병된 공병/의무 인원으로 편성된 서희부대는 최고 기온 59℃의 극한 상황에서도 훌륭히 임무를 달성하여 그 성과를 극대화 하였다. 전 장병이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극한의 땅에서 새로운 체험을 한 것이다. 개인의 경험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많은 체험이 되었고, 국가이익에 보탬이 되었다.

서희부대의 파병 성과는 첫째, 한·미간 동맹관계 재확인이다. UN의 결의 없이 전쟁이 개시되어 한국내 파병 반대여론이 강했으나 이를 극복하고 신속파병 하였다.

당시의 한반도는 핵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의 분위기가 마치 촉발 일보 직전의 다이내마이트 같은 상황이었다. 만약 한국이 이라크에 파병을 하지 않았다면 한반도는 더욱 더 극한 상황으로 치달았을 것이다. 미국에 대한 지지와 다국적군(영국, 호주, 폴란드, 이탈리아 등)에 대한 전투지원 등으로 미국과의 동맹강화에 이바지하여 결과적으로 한반도 안보환경에 안정을 기할 수 있었다. 둘째 한국군의 국제적 위상 제고이다. 한국군 특유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임무수행자세로 타 동맹군을 지원함으로써 군인으로서의 참모습을 보여 주었다. 또한 이라크 주민에 대한 정성어린 민사작전으로 이라크 주민으로부터도 칭찬을 듣는 등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다. 군복 입은 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했다. 셋째, 전장 경험 획득이다. 이라크 자유작전이 종료된 상태이지만 전투에 직접 참가한 부대들의 안정화 작전을 지원하였고, 한국군도 수행함으로써 실전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 이라크 전쟁은 또 다른 형태의 전쟁으로써 “IED(급조 폭발물)” 공격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성을 느끼는 등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급조 폭발물로 인한 미군의 피해는 전쟁으로 인한 희생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보고 있다. 한반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국지전의 한 양상이다. 결론적으로 이라크 파병은 국민의 반대여론이 심했으나 국가 이익(안보, 에너지, 동맹 강화 등)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히 파병하여 국가에 큰 보탬이 된 좋은 결과를 얻은 파병이었다.

가. 단비부대 파병 성과

지진으로 인한 재난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파병도 서희부대의 파병만큼이나 많은 국가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위상 제고이다. UN 임무단에서는 한국군의 임무수행 태도에 매우 고무적이었다.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임무를 안전사고 없이 수행했던 것이다. 피해복구 106건 수행 등 한국의 국격을 높였다. UN 반기문 사무총장은 직접 부대를 방문하여 격려코자 했으나 도로 상황 악화로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그러나 한국군의 훌륭한 임무수행 자세와 태도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고,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둘째 아이티 현지 주민에게 친한화(親韓化)를 달성했다. 현지 주민 대상으로 실시한 진료에서 3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간 1만여 명의 환자를 무상으로 진료 하였다. 낙후된 의료시설이었던 현지 상태에서 진료를 잘 받지 못하다가 단비부대의 무상진료에 수많은 인과가 연일 몰렸다. 의무 진료를 통한 한국 홍보로 아시아의 한국을 알게 된 아이티 국민이 많았다. 셋째 신속한 파병체계 구축의 계기가 되었다. 신속파병을 위한 발전사항이 많음을 느끼고 이를 조속히 추진해야 됨을 느끼는 기회가 되었다. PKO 활동 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속한 파병인데 이를 위해 국제평화지원단이 창설되는 직접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제 5 장 한국군 신속 파병 방향

제 1 절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

가. UN PKO 참여 법률의 문제점

1) 다양한 PKO활동 제한

UN PKO 참여 법률의 주요 내용 중 제 2조 PKO활동의 정의에서 법률은 UN PKO 활동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다국적군 파병은 제외한다. 이는 다국적군의 파병 요청 시 신속한 파병을 위한 동법률 적용이 불가하다. 법적 근거가 없으니 국민의 공감대와 파병지지를 얻기 힘들고 국가의 사활적 이익⁴⁶⁾을 위해 불가피하게 파병이 필요할 때는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우리 국민들이 UN PKO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만 다국적군 파병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경향을 띄는 것도 동법률의 영향이 아닐까 판단된다. 국민의 여론도 다국적군에 대한 PKO는 상당히 적대적으로 보일 수 있다. 서히부대 파병 시는 대통령 탄핵소추의 정치문제와 맞물려 파병자체가 불가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아프칸 오쉬노부대의 파병에 대한 국회의 동의안 통과 시에도 정치권과 국회의 갈등이 많았다. 아이티 단비부대의 창설식 행사에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 6명이 참여했고, 국방부 장관등 군내 주요 직위자들과 외국 무관들이 참석했다. 국내 주요언론들도 초청하여 해외파병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이는 아이티 단비부대의 창설식(2월 17일) 1주일 후 아프칸 오쉬노부대의 파병 반대에 대한 국회동의 여론을 만들기 위한 행보였다.

2) 복잡한 국회의 동의 요건

파병을 위한 사전 동의 시 앞에서 언급된 4가지의 요건(1천명 이내, 1년 이내, 접수국 동의, 비전투 임무)이 너무 복잡하고 신속한 파병에 제한 요소가 될 수 있다. 1천명 이내라는 부대의 규모와 1년 이내의 파병기간의 한정은 신속파병과 연관성이 낮다. 그러나 파병접수국의 동의와 파병부대의 비전투 임무는 문제가 있다. 첫째 파병 접수국의 동의 사항은 파병 접수국의 정부기능이 제대로 유지될 경우에 국가의 파병 요청, 동의 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파병을 요청하는 국가는 정부의 기

46) 강현구(2009), "한국의 이라크 파병과 국가이익에 관한 연구", 고려대 행정대학원, p58

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라크의 서희부대 파병 당시 이라크 정부는 기능 상실되었으며, 사담 후세인은 도피 행각 중에 있었다. 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했다. 또한 아이티 파병시에도 아이티 정부는 그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다. 행정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국에 대한 파병 요청은 상당히 제한된다. 따라서 파병 접수국의 파병 동의 의사 표현보다는 UN의 승인이 있을 경우 피파병국의 파병 요청에 대한 동의로 보아도 될 것이다. 전쟁에 의한 정부 기능 불가 등이 발생 시 파병요청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본다. 둘째, 비전투 임무로 한정하는 내용이다. UN PKO에서도 그 임무가 군사적인 것까지 확대되어 UN 임무단에서 지휘통제를 받고 있다. 이라크 서희부대의 경우 현지의 위협세력에 의한 야간 공격의 첩보를 획득하여 대피훈련을 2회 실시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파병부대는 비전투임무만 수행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현실적으로 비전투임무만을 수행토록 한다면 막상 파병 시 한국군의 국격은 추락되고 파병의 목적 자체가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적인 국제평화유지활동의 참여확대 추세에도 맞지 않는 국회의 동의 요건이다. 비군사적 임무를 한정한 것은 파병 인원의 생명 안정성과 이로 인한 국민의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내해야 될 것이다.

**복잡한 파병 동의 요건과 다국적군 파병을 제외하여
신속한 파병을 저해하는 법률**

3) 소결론

앞에서 파병에 관련된 헌법과 법률, 훈령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1] 파병관련 법적 근거들의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시 사 점 / 문 제 점
헌 법	• 5조(국제평화 유지 노력) • 60조(국회의 동의권)	• UN PKO 및 다국적군 PKO가능 • 국회 동의권으로 신속파병 제한
법 률	• 2조(UN PKO로 한정) • 6조(국회 동의)	• 다국적군 PKO 제외 • 국회 동의권 복잡 ⇒ 신속파병의 걸림돌
훈 령	• 2장(UN PKO, 다국적군 PKO) • 3장(상비부대 운영)	• PKO범위 확대로 법률과 상충가능 • 상비부대운영, 신속파병의 초석 마련

PKO 활동측면에서는 헌법은 UN 및 다국적군 PKO가 가능하지만 법률은 UN PKO만 가능하고 훈령은 UN 및 다국적군 PKO가 가능하다. 따라서 PKO활동의 법률이 다국적군 PKO까지 포함토록 개선해야 한다. 신속파병 측면의 검토에서 국회 동의권이 헌법, 법률이 복잡하나 훈령상은 상비부대 1천명이내에서 신속파병이 가능하다. 따라서 법률상의 국회 동의권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법적근거들을 PKO 유형, 국회동의권을 바탕으로 신속파병 용이성을 판단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2] 신속 파병의 용이성 비교

구 분	헌 법	법 률	훈 령
PKO유형	UN 및 다국적군 PKO	UN PKO	UN 및 다국적군 PKO
국회동의권	동의	동의절차 복잡	1천명이내 사전동의
신속파병	△	△	○

나. 신속한 파병을 위한 UN PKO 참여 법률 개정

위에서 UN PKO 참여 법률을 알아보았다. 이를 극복하고 신속한 파병을 위해서는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의 UN PKO 참여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5-3] 신속 파병을 위한 UN PKO 참여 법률 개정 건의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내 용	UN PKO	UN PKO와 다국적군 PKO 파병 내용 포함
	국회의 사전동의 4가지	국회의 사전 동의 요건 단순화 (파병국의 동의, 비전투임무 한정 요건 삭제)
신속파병 가능성	제한적 가능	신속파병 가능

UN PKO 참여 법률에서 제외된 다국적군 PKO의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국회의 사전동의 요건 중에서 파병국의 동의와 비전투임무 수행의 한정요건도 삭제할 필요가 있다. 다국적군의 PKO 파병 필요성은 파병성으로

나타난 국민의 보호 성과이다. 그 예는 올해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 주얼리호 선원 구출작전에서 석해군 선장의 긴급의료 후송이다. 석해군 선장이 총상을 입었을 초기에는 의식도 있었으나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게 되자 신속한 후송이 요구 되었다. 해상에서 1,000km 떨어진 미군 기지의 헬기가 30분만에 청해부대에 도착하여 후송되었고, UAE에서도 왕실 전용기를 지원해주어 석해군 선장은 지금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미군의 헬기지원은 청해부대가 한국 합참으로 요청, 합참의장은 연합사 사령관(샤프대장)에게 요청, 연합사령관이 미해군에게 지시하여 미군의 헬기가 지원될 수 있었다. 미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우리나라가 이라크, 아프칸 등의 다국적군 PKO에 참가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성과이다. UAE로의 아크부대 파병도 같은 맥락으로 본다. 세계 각국과의 동반자 관계 형성과 세계 평화 참여로 그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은 군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국민인 것이다. 소결론적으로 다국적군 PKO와 국회 동의 요건 간소화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파병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면 국민의 지지도도 높아지리라 판단된다.



동 파병지원과가 신설된다면 인사 및 군수분야의 분야별 총괄담당과 업무 협조를 하면 된다. 기존의 각군본부와의 15개 이상의 업무 협조선이 합동 파병지원과와의 업무로 단순화, 동일화가 가능하리라 본다. 합참의 해외파병과에서도 각군본부와 업무 협조 및 지시가 가니라 합동 파병지원과를 통하면 업무의 확인과 현황 종합, 진행상태 확인이 용이하리라 생각된다.

나. 파병 상비부대의 준비태세 강화

해외 파병은 기동성, 신속성이 중요하다. 국제사회가 요청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파병할 수 있는 태세와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파병지역에 신속히 파병할수록 파병 접수국이나 파병구가 모두에게 이로움이 많다. 현재 한국군의 파병 상비부대인 국제평화지원단(온누리부대)⁴⁷⁾ 2010년 7월 1일 창설되었다. 온누리 부대는 전체 또는 전부의 “온”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의미인 “누리”를 의미하는 합성어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UN PKO 참여 법률에 근거하여 창설되었다. 위 법률에서도 검토해 보았지만 법률에서는 다국적군 PKO는 제외된다. UN PKO는 1천명 이내 규모로 1년 이내의 기간과 국회의 사전 동의 4개 요건 시 1개월 이내 파병이 가능하다. 파병 상비부대는 파병전담부대와 별도지정부대(공병, 수송, 의무 등)와 예비지정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별도지정부대는 반기별 1주간 파병관련 기본교육을 받고 있으며 예비지정부대는 특전사 예하 4개 여단에서 1개 대대를 지정해 놓고 있다. 인원에 대한 준비태세는 1개월 이내에 파병이 가능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물자 및 장비에 대한 준비태세는 아직도 미흡하다. 2010년 단비부대 1진이 굴삭기 8대, 페이로다 2대 등 17대를 전국 공병부대에서 차출하여 파병을 갔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군 공병부대에서 보유 및 운행 중이던 장비를 차출했다. 그나마 상태가 양호한 장비를 차출했는데 굴삭기, 구레이다, 도차 등은 20년 이상 경과된 장비였다. 이는 파병지에서 장비의 정상적 운행이 곤란하고 수리 및 정비가 쉽지 않다. 추가로 해외파병의 소요가 발생 되었는데 공병위주의 부대라면 장비 수급이 상당한 문제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건설장비와 기동장비의 구매를 위해서는 통상 1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따라서 온누리 부대의 별도지정부대에 대한 장비의 구매를 통한 장비 현대화가 필요하다.

47) 국방저널 440호, 국방홍보원, 2010. 8, p46

[표5-5] 단비부대 장비 현황⁴⁸⁾

구 분		수량(대)	연 식	구 분	수량(대)	연 식
계		16	-			
굴 삭 기	궤 도	3	2003	페이로다	2	2008
			2006	구레이다	2	1990
			2007	진동로라	1	2007
	타 이 어	5	2003	도차	2	2000
			2009(2)			1994
			1997	지게차	2	2009
			1999			2010

별도지정부대는 육군공병단 중 3개 부대가 지정되어 있는데 3개의 부대 보유 장비도 위의 표처럼 장비가 노후화 되어 있다. 온누리 부대의 파병준비태세 중 가장 시급한 것이 장비의 현대화라고 본다. 이의 해결을 위해 국방부 및 정부차원에서 장비를 구매하여 평시 별도지정부대에서 운영하다가 신속파병이 결정되면 이 장비들을 그대로 파병장비로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언제까지 기존부대에서 장비를 차출하는 주먹구구식 파병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숨이 나기도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파병전담부대와 별도지정부대, 예비지정부대원이 각각 1천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각 부대별 인원내 대한 전투복, 전투화 등 각종 물자를 비축해 두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파병준비기간에 피복류 준비를 위해 체촌, 수정, 수령 등에 보통 3주 정도 소요된다. 사전에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전투 긴요물자 3천명 분량을 확보해야 한다.

다. 정부차원의 PKO센터 신설

해외 파병에 관한 간부교육과 정보 수집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부서는 국방대학교 PKO센터 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개처 21명으로 구성되어⁴⁹⁾ 파병관련 활동과 참고자료, 파병부대 주요 직위자 선소집 교육, 연 2회 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있다. 파병부대와 민간 대학의 파병 전문가들과 파병부서의 담당자들을 이어주는 핵심 역할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대 PKO센터는 국방부와의 업무 협조는 용이하나 정부의(외교통상부)의 협조와 파병정책 추진

48) 조영기 등 3명(2010), 『단비부대 1·2진 귀국 보고서』, 국방대 PKO센터, p162

49) 국방대 군 홈페이지, 편성/임무 참고

은 미흡한 상태이다. 합참의 해외파병과나 국방부의 국제정책과에서는 타국가와의 협조에 제한이 따른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센터장으로 하는 정부차원의 PKO센터의 신설이 필요하다. 국방대 PKO센터를 모체로 증강하여 외교통상부의 관련부서와 국방부의 담당부서를 총괄하는 정부급 PKO센터 신설이 필요하다. 이는 해외파병 1진 부대의 신속 파병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본다. 파병결정(정부/국방부/국회)에서 인원선발(육본), 교육(국제평화지원단/PKO센터)까지 각각 준비하고 있다. 조직적인 신속파병을 위해서는 해외파병 전담의 정부차원 PKO센터가 신설/확장되어야 한다. 2003년 서히부대 파병 시 쿠웨이트로부터 영공 사용을 승인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쿠웨이트와 한국이 SOFA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군이 쿠웨이트에 들어와서 잠시라도 주둔하게 되었을 때 사고가 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약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해결하려 노력하고, 미국의 영향력으로 한국군의 쿠웨이트 진입이 가능했다. 이처럼 정부차원의 PKO라면 국가 간의 문제들은 지금보다 쉽게 해결되리라 본다. 항공기, 선박 등이 타국의 영공과 영해를 통과할 때 보다 쉽게 문제해결이 되리라 생각된다. 정부차원의 파병 정책 추진으로 국회와의 업무협조, 언론기관과의 협조 용이성 향상으로 국민의 지지도를 얻기도 쉬우리라 본다. 다국적군의 파병에 대한 국민의 설득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 다국적군 파병이 한반도 안보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소수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국가의 사활적 이익(안보, 에너지 확보 등)을 위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는 국방부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해외 파병의 경우 UN PKO와 다국적군 PKO의 개념구분, 임무성격,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의 설득작업은 해외파병 신속파병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이를 추진하기위한 기구로써 정부차원의 PKO센터가 필요하다.

라. 해외파병 전문 인력 개발

해외파병 1진 부대의 신속파병을 위해서는 전문 인적자원의 개발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몇 가지를 제시해 본다. 첫째, 개인파병의 확대이다. 개인 파병은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UN PKO에 8개소 37명, 다국적군 PKO에 4개소 16명, 총 53명 밖에 되지 않는다. 개인 파병인원은 부대 파병의 안내자이며 인계철선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예를 들면 2003년 이라크 서히부대에서는 다국적군의 참모부에 소령 정영식

등 3명이 개인파병으로 파병되어 서희부대의 부대파병을 유도하는 역할을 했다.

[표 5-6] 한국군 개인파병 현황

구 분			인원 (명)	구 분		인원 (명)		
UN PKO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		8	다국적 군 PKO	바레인연합 해군사령부	참모	3	
	라이베리아 임무단		2			협조장교	1	
	남수단 임무단		6			CTF참모	1	
	아비에이 평화유지군		1		지부티연합 기동부대	협조장교	3	
	수단 다푸르 임무단		2			참모장교	1	
	레바논 평화유지군	사령부참모	5			아프칸 참모장교		4
		서부여단참모	5		미국중부 사령부	협조단	2	
	코트디부아르 임무단		2			참 모	1	
	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		4		소 계			9
	아이티 안정화지원단		2		총 계			53
소 계			24	소 계			9	
총 계				53				

또한 2010년 아이티 단비부대 1진 파병 시 개인파병으로 이미 활동 중이던 이선희 소령(현재 중령으로 진급)이 아이티 안정화임무단의 군수참모를 수행하고 있었다. 단비부대의 숙영지, 숙식, 차량 유류 등 부대파병에 큰 역할을 함으로써 신속한 파병이 가능했다. 만약 이선희 소령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단비부대의 신속파병은 힘들었을 것이라고 연구자의 경험(단비부대 정작과장)으로 알 수 있었다. 신속한 파병을 위한 둘째는 파병유경험자의 인사관리이다. 해외파병에서 타 파병국의 참모요원들과 대화를 나누어보면 그들은 경험도 많고, 업무규정도 잘 알고 있음을 느꼈다. 이는 파병인원을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파병관련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기본적인 보직만 마치고 나면 다시 파병관련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되니 전문가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의 경우는 좀 다르다. 단비부대 1진의 경우 2회 이상 파병 경험자는 간부 11명밖에 되지 않았고, 3회 이상 파병 경험자는 없었다. 파병의 기회를 많은 인원에게 주려는 의도도 좋으나 일부인원은 3회 이상 파병유형별 파병

의 기회를 주어 경험을 늘리고, 파병관련 부서에서 근무토록 인사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합참의 해외파병과 직원 중에는 파병을 경험한 직원이 아무도 없다. 파병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파병 경험이 없는 직원으로만 구성된다는 것은 인사관리에 개선점이 있다고 본다. 셋째는 파병교육의 확대이다. 간부육성 교육기관과 육군의 병과 학교 등에서는 교육생에 대해 파병관련 기본교육을 해야 한다. 파병인원에 대해 국방대 PKO센터에서 주요직위자를 대상으로 선소집 교육을 하며, 국제평화지원단에서 파병 유경험자 교육, 초빙교육, 현지인 교육 등을 실시하는데 이는 너무 부족하다. 정부차원의 PKO센터가 신설된다면 더욱 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파병을 가는 간부들의 경우 파병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고, 파병의 유형도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학교별 2시간 정도를 할당하여 평화유지활동, UN의 규정 등을 교육하는 것을 제시한다.



제 3 절 파병 지원분야 발전

가. 표준화된 조립식 컨테이너 개발

해외파병 1진 부대는 짧은 파병준비기간으로 인해 주둔지 조성을 위한 자재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한국군이 사용하는 24인용 천막을 이용한다. 1진 부대의 파병이후 완성품의 컨테이너를 한국에서 수송하여 주둔지 조성 공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한국에서 파병지까지 해상수송, 파병지에서 육상수송, 파병지 공사 등 통상 10개월 정도 소요된다. 컨테이너의 부피가 크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표준화 조립식 컨테이너의 개발과 보급이다. 파병 1진 부대는 대부분 영구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한국군용 24인용 천막을 이용한다. 영구시설이 설치되기 전까지 2~3개월가량 임시시설로는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천막도 복사열이 심하고, 비가 새어 비닐을 덮는 등 단기간의 활용 밖에 되지 못한다. 따라서 표준화된 조립식 컨테이너의 개발과 보급을 제시한다. 단비부대의 3진 부대원들은 영구시설을 준공하여 사용하고 있다. 컨테이너 영구시설인데 이는 완성품을 한국에서 제작하여 수송한 것이다. 완성품이 아닌 표준화된 조립식 컨테이너의 개발을 제시한다. 사진은 단비부대 컨테이너의 각종시설 모습이다.

<그림 5-1> 단비부대 3진의 컨테이너 영구시설 모습



국방시설본부나 육군본부의 시설처 등의 부서에서 컨테이너의 연구가 필요하다. 컨테이너는 기존의 규격품인 3m×6m 또는 3m×9m, 3m×12m형의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마감재가 모두 설치된 벽체, 바닥판, 천정판을 제작하여 현지에서 조립하는 것이다. 파병지에서 파병 장병에 의해 컨테이너의 기초콘크리트만 설치하고 나면 공병 장병들이 조립을 할 수 도 있을 조립식으로 제작하는 것이다. 완성된 컨테이너에 비

해 수송물량이 약 1/5로 감소되어 수송비용도 절약하고 파병지에서의 수송 및 저립/설피도 단기화가 가능하리라 본다. 컨테이너는 생활관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시설의 적용도 가능할 것이다. 조립식 컨테이너는 평소 국내에서도 군부대의 임시 숙영시설이나 재해재난 시 임시시설로도 활용 가능하다. 단비부대의 경우 영구시설의 완성형 컨테이너 숙영시설을 수송 및 설치하는데 1년 이상 소요되어 파병 1진 부대원은 이용도 할 수 없었으며 3진이후의 장병들이 이용하였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시설의 설계 소요량에 대해 국방부의 설계기준을 고려하여 연구자의 의견을 제시해 본다.

[표 5-7] 표준화 조립식 컨테이너 설계소요 판단

구 분	시설 용도	컨테이너 크기	비 고 50)
주거시설	생활실	3m×9m, 8명 1동	
행정시설	지휘관	3m×6m, 소령이상 1동	사무실 겸 침실
	참모부	3m×12m, 2개과 1동	
	행정반	3m×9m, 중대급 1동	
작전/훈련	지휘통제실	3m×12m, 1동	
	통신실	3m×6m, 1동	
위생/급식	식당	철골조 판넬조립식 150m ²	1m ² /인, 2교대
	화장실	3m×9m, 중대별 1동	대변기12인/개, 소변기 16인/개
	세면장	3m×6m, 중대별 2동	8인/개소
	세탁실	3m×6m, 중대별 1/2동	세탁기 6대 1동
	샤워실	3m×9m, 중대별 1동	샤워수전 10인/개
의료실	의무실	3m×9m 4동, 3m×6m 3동	입원실, 대기실, 진찰실, 약제실, 처치실, 창고, 군의관실
저장/정비	공급실	3m×6m, 1동	
	교보재실	3m×6m, 1동	
	탄약고	3m×6m, 1/2동	
교육시설	병영도서관	3m×6m, 1동	
편의시설	이발소/휴게실	3m×9m, 1동	
	매점	3m×9m 1동, 3m×6m 1동	창고, 진열
	실내체력장	철골조 판넬조립식 50m ²	0.09m ² /인
	사이버정보방	3m×6m, 1/2동	
	여군전용시설	3m×6m, 1동	샤워, 화장실, 세탁실
	기계실/전기실	3m×6m, 2동	

50) 국방시설기준, 2008, 국방부

나. 파병 수송 수단 및 능력 개발

해외파병 1진 부대는 수송문제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인원수송용 민간항공기를 계약하고 항공회사와 국방부에서는 파병국의 공항을 이용하기 위해 승인의 절차를 밟는다. 이런 절차를 수행하다보면 파병 일정이 수송수단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물자 수송을 위한 민간선박의 수급도 쉽지 않다. 외국으로의 화물 수송으로써 한국선박이 아닌 외국선박을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송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된다. 단비부대의 경우 해상수송을 계약한 회사는 외국회사였는데 약속된 날짜보다 10일 늦게 항만에 도착했고, 지연도착과 화물 하역의 지연에 따른 운임비를 추가 요구하여 큰 골치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수송수단을 군 수송장비를 이용토록 능력을 향상시킨다. 군 수송수단은 해군수송선(LST)와 공군수송기(C-130)를 이용하는 것이다. 2003년 이라크에서는 공군의 수송기로 이루어진 다이만 부대를 파병하기도 했다. 한국에서 이라크까지 비행기로 8시간 소요되는데 이 정도는 한국 수송기가 갈 수 있는 거리였다. 한국 공군의 수송기의 운행이 가능하다면 해외파병 1진 부대의 경우 주둔지 조성을 위한 긴급물자(천막, 전기자재, 식수, 식량, 총기/탄약 등)를 수송할 수 있다. 1진 부대는 인원 수송은 민간 항공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기본적인 화물의 수송이 늦어져 신속파병이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해군에서도 군용 선박을 이용한다면 파병부대가 요구하는 일정과 물자를 수송할 수 있다. 단비부대의 경우, 인원 소집(2월 6일) 후 4일 만에 화물의 해상선박 수송이 2월 10일에 출항했다. 주말을 포함한 4일 동안 담당자들이 물자를 준비하고 소집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한국 해군의 수송선을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 민간 소송장비의 계약 지연, 수송지연 등을 예방하여 신속 파병이 가능토록 하고 파병지역 주변국가의 영공과 영해를 통과할 수 있도록 평시에 협약을 맺어야 한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타 국가와 협약을 맺어 놓아야 한다.



제 4 절 민군 협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해외 파병의 1진 부대는 파병국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파병을 가게 된다. 파병지는 분쟁이나 재해재난을 당한 곳이라 민간단체들인 NGO들이 이미 파견되어 봉사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한국군 부대는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봉사단체들은 이미 수년전부터 파견되어 활동 중인 단체가 많다. 아이티 단비 부대를 방문한 NGO들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5-8] 단비부대 방문 NGO 현황⁵¹⁾

구 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계(명)	6	147	272	145	186	307		1,063
굿네이버스	6	61	190	73	25	21	4	380
선교사단체	—	6	14	22	101	233	92	468
교민의사회	—	15	—	—	—	—		15
WGM	—	37	7	6	2	21	7	80
열린의사회	—	3	—	—	—	—		3
기아대책기구	—	—	37	23	5	22	4	91
개척자들의도시	—	2	—	—	—	—	3	5
serving friends	—	4	1	—	4	—		9
미국의사단체	—	19	8	—	—	—		27
KOICA	—	—	7	10	11	3	2	33
한몸 한마음 운동본부	—	—	—	5	—	—		5
대한적십자사	1	—	—	2	—	—		3
굿 피플	—	—	8	—	—	—		8
Korean Diakonia	—	—	—	4	—	—		4
동서 문화교류회	—	—	—	—	5	—		5
해피 엔드	—	—	—	—	4	—		4
WORLD SHARE	—	—	—	—	27	7		34
월드 비전	—	—	—	—	2	—		2

51) 조영기 등 3명(2010), 전게서, p154

위의 표에서 아이티에 수년 전부터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었던 단체는 굿네이버스, KOICA(한국 국제협력단), 굿피플 등이 있었다. 이들 단체들의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단비부대 1진은 파병 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부대 주둔에 따라 한국의 각종 단체(종교단체, NGO, 정부기관 등)들의 아이티 지진 피해 주민 봉사활동은 활기를 띠게 되었다. 각종 단체들은 물자 보관을 부대 주둔지에 의탁했고, 부대는 단체들을 통해 현지정세, 문화, 교통상황, 지형정보, 아이티 지원소요 등을 얻을 수 있었다. 상호 협력이 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이처럼 해외에 나가 있는 NGO, 종교 단체들과의 협력을 정부차원에서 도와주고, 이들을 이용한다면 해외파병 1진 부대는 신속한 파병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군부대와 NGO들은 노력의 통합과 상호지원, 동일한 기간에 상이한 계획이 동시에 시행되도록 협력함으로써 각 구성요소가 개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보다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⁵²⁾



서희부대 장비 작업 전경

52) 박순향(2010), "평화활동에서의 민군 협력의 필요성과 발전방안", 국방대 PKO센터,p50

6 장 결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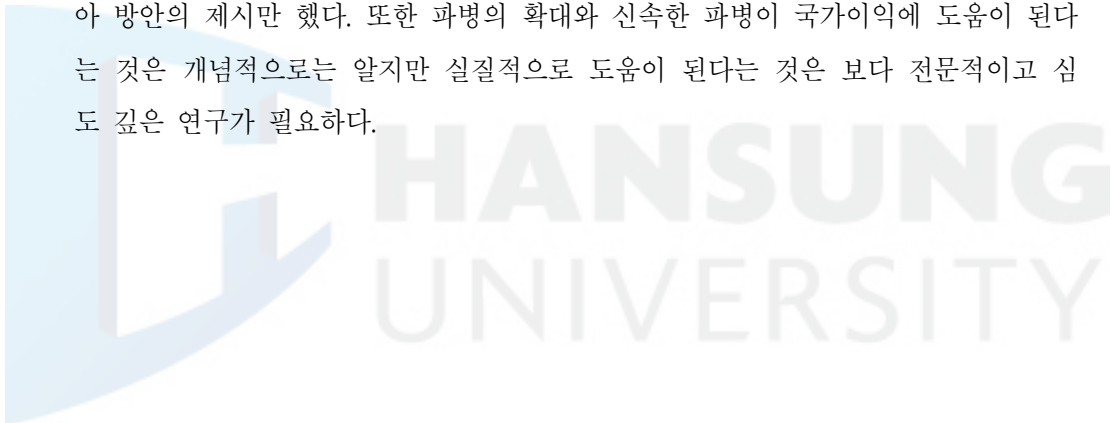
UN이 창설되었으나 안보리 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세계각지의 소규모 분쟁은 조정 통제 할 수 있는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로 인해 UN PKO가 탄생하였다. 냉전 종식 이후 분쟁이 늘어나고 그와 비례해 UN PKO는 양적 질적으로 다양화 복잡화 되어 왔다. 평화유지활동의 유형에 따라 UN PKO와 다국적군 PKO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임무, 경비, 지휘체계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세계 평화유지를 위한 목적은 동일하다. UN이 펼치는 PKO활동의 근거는 문서상에서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이는 인류가 평화를 갈망하고 UN의 설립 취지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세계적 추세가 PKO확대와 신속파병임을 확인하였다. 강대국 이든, 경제 저개발국가이든 저마다 나름의 국가 이익을 위해 PKO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 대세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국가이익(안보, 에너지 등)을 얻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연구자는 2003년 이라크 서희부대 1진에서 중대장으로 파병되었으며, 2010년에는 아이티 단비부대 1진의 정작과장으로 파병되어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했다. 두 개의 파병부대는 7년간이라는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파병 1진 부대의 파병준비는 발전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또한 세계 경제 12위의 대국임에도 해외파병의 병력 수준이 30위권 밖이다. 파병준비간의 참모기능별 준비 실태와 개선사항, 파병 간 참모기능별 주요활동과 개선사항을 알아보았다. 1진 부대의 실태와 문제점의 그 근본원인은 무리한 신속파병이었다. 연대급 부대를 1개월 만에 창설하기도 힘겨운데 파병준비까지 해야 되니 이는 당연히 파병지에서의 장병의 애로사항이 되었다. 또한 인사, 정보, 작전, 군수, 공사분야의 세부적인 실태와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차후 파병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신속파병을 위한 방안은 크게 4가지로 제시하였다. 우선은 신속파병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것이다. UN PKO 참여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인 UN PKO만 가능하다는 것과 국회 사전동의 요건의 복잡성을 개선해야 한다. 다국적군 PKO도 가능하게 하고, 국회 동의 요건도 단순화하여 정부정책의 결정으로 파병 상비부대를 1개월 이내에 파병토록 해야 한다. 둘째 신속파병 기반체계 구축이다 3군 합동의 파병지원과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지원업무의 창구를 단일화하여 업무의 단순화, 통일화를 이룰 수 있다. 또한 상비부대의 공병부대 장비를 현대화 하고, 물자도 비축해야 한다.

정부차원의 PKO센터를 신설하여 언론, 국회, 타 국가와의 업무를 해결하고, 국가적 차원의 민간인, 경찰, 군인 등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다. 파병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개인파병을 확대하여 이들이 부대 파병의 안내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의 신속 파병 방안은 파병지원 분야의 발전이다. 표준화된 조립식 컨테이너를 개발하여 수송 비용과 시공 기간을 단축하고 파병 인원, 장비 수송 시 우리의 해군과 공군의 장비를 이용토록 수송수단을 개발 및 확보하고, 능력을 육성하는 것이다. 넷째 민군의 협력 강화로 상호 지원,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얻는 방안이다.

이상의 방안들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세계 각지에서 빛나는 한국 파병부대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들의 실질적인 검증은 연구자의 신분과 권한, 능력을 벗어나는 부분이 많아 방안의 제시만 했다. 또한 파병의 확대와 신속한 파병이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은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사이트

- 강현구(2009), "한국의 이라크 파병과 국가이익에 관한 연구", 고려대 행정대학원
- 국방대학교 PKO센터 군 홈페이지
- 국방시설기준(2008), 국방부
- 국방홍보원(2010), 『국방저널 440호』, 국방홍보원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9939호, 2010, 1, 25)
- 김열수(2010), "최근 평화유지활동의 변화방향과 대응전략", 국방대학원
- 박순향(2010), "평화활동에서의 민군 협력의 필요성과 발전방안", 국방대 PKO센터
- 신경수(2010), 한국군 해외파병을 위한 법적·제도적 문제, 국회동북아 평화안보포럼 세미나 자료, p9
- 육군본부(2004), 『해외파병 군수지원』 교육참고 4-0-1
- _____ (2011), 『분쟁해결사, "PKO 바로알기』, 국방대 PKO센터
- 이근수 등 3명(2008), 한국의 UN PKO 활동 참여방안, 국방대 PKO 센터
- 이우식 등 다수(2004), 『이라크 서희부대 1진 귀국보고서』, 국방대 PKO센터
- 전병환(2011), "UN PKO 정책 발표자료", 국방대 PKO 센터
- 전제국(2011), "한국의 해외파병과 한반도 안보", 『국가전략』 17권 2화, 세종연구소
- 조영기 등 3명(2010), 『단비부대 1·2진 귀국 보고서』, 국방대 PKO센터
- _____ 등 3명(2010), 『이라크서희부대1진귀국보고서』, 국방대 PKO센터
- _____ 등 3명(2011), 『아이티 단비부대 1·2진 귀국보고서』, 국방대 PKO센터
- 한용섭(2010), "한국의 파병정책 발전방향", 국방대PKO센터
- 홍성원(2009), "한국군의 UN PKO현황과 발전방향", 동국대학교

ABSTRACT

The study on development of rapid deployment scheme
for the overseas Peace Keeping Operation unit
-Focused on Suhee unit in Iraq and Danbi unit in
Haiti-

Roh, Jeong-Ki

Major in Division of National Defence
Management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e study is based on this researcher's experience during deployment as a company commander of the first Suhee Unit in Iraq in 2003, and as the Branch Chief of Intelligence and Operations of the first Danbi Unit in Haiti in 2010. The main point of concern was that despite the 7-year term between the two initial deployments, there was no quantifiable improvement in the deployment-preparation process. Furthermore, the ROK's participation in UN PKO ranks 30th globally in terms of personnel deployed despite the nation's standing as the twelfth-largest economy in the world. The root of these problems arises from unnecessarily hasty reparation. It is difficult to assemble a regiment within a month; doing so while preparing for overseas deployment generates possibilities for multiple problems.

There are four categories to improve. The first is amending and

simplifying the National Assembly's pre-approval process so as to remove unnecessary procedures and allow for Multi-national PKO as well as UN PKO. Removing bureaucratic formalities will help reach the goal of deploying within a month of government approval. Second, the military should establish a Joint Overseas Deployment Branch to oversee, unify, and further simplify current support operations. The branch should also modernize equipment and allocate supplies for a reserve deployment engineer unit. On the civil-government side,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PKO center for dealing with media, international affairs and relations, and the National Assembly. Furthermore, on a civilian level, personnel must be professionally trained to promote the deployment of troops overseas and serve as guides for subsequent deployment units. A development in logistics is the third category that can be improved upon. For example, a standardized assembly supply container could be designed and implemented - with the use of ROK Navy and Air Force vessels for shipment - to reduce costs. Lastly, it is important to achieve greater synergy from improved civil-military cooperation.

The proposed improvements will not be easy to obtain in a short time frame. Still, further research in this field is encouraged as it will help define the material benefits of making these changes. This researcher also humbly admits that many of the aforementioned amendments to the current PKO process are beyond the scope of his authority; which is why these ideas were not explored in further depth. Regardless, the ROK Military should strive for greater efficiency and scale in its overseas PKO program to continue its role as active participants in world affairs.

<Keywords> PKO, Rapid Deployment.